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 두레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Korea Women's Hot Line

후원 여성가족부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발행일 2017년 11월 30일 **발행처**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한국여성의전화 **발행인** 이미경·고미경 **후원** 여성가족부
만든이 김보화, 김신아, 김홍미리, 손문숙, 조재연, 허민숙(가나다순) **이메일** research@sisters.or.kr(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디자인** 디자인이즈

이 안내서는 2017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울림과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컨소시엄으로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Ⅰ. 성폭력 역고소 이해하기 _5
1. 성폭력 역고소의 정의 _11
2. 성폭력 역고소 논란의 사회적 배경 _12

Ⅱ. 성폭력 역고소의 유형별 특징 알아보기 _21
1. 무고죄 _22
2. 명예훼손 _42
3. 그밖에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역고소의 유형들 _50

Ⅲ. 성폭력 역고소 과정에 따른 대응방법 생각해보기 _57
1. 사법제도를 통한 대응 준비하기(①신고/고소 전 단계) _60
2. 성폭력 수사과정에서의 역고소 위험 방어하기(②성폭력 수사단계) _64
3. 성폭력 역고소 수사과정에서 방어하기(③역고소 수사단계) _76
4. 성폭력 역고소 재판과정에서 대응하기(④역고소 재판단계) _81

Ⅳ. 성폭력 피해자·지원자로서의 나를 살펴보기 _83
1. 성폭력 역고소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 _84
2. 내가 지원자라면? _87

Ⅴ. 알아두기 _95
1. 도움이 되는 법과 판례 _96
2. 도움이 되는 자료 _119
3. 도움이 되는 곳 _120

a Guide for supporting vICTIMS of Counter-Accusations of SEXUAL VIOLENCE

I. 성폭력 역고소 이해하기

1. 성폭력 역고소의 정의 _11

(1) 성폭력 역고소란? _11

(2) 성폭력 역고소에 활용되는 법적 조치들 _11

2. 성폭력 역고소 논란의 사회적 배경 _12

(1)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 _12

(2) 성폭력을 다루는 언론 보도의 문제와 지침의 부재 _14

(3) 성폭력 신화(Sexual Violence Myth)와 통념 _17

(4) 통념의 효과 : 피해자에 대한 불신과 피해 의심 _19

성폭력 역고소 이해하기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 동의 없이 섹스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강간'을 했습니까?"
"아니오" *

위 글은 2017년 10월 31일 뉴욕타임즈 에디션 1면에 실린 "강간을 저지른 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번역한 글로 2017년 11월 13일 직썰, "성폭력 가해자들은 자신이 '나쁜 사람'인지 모른다"에 실린 기사의 일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한 적은 있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은 단지 미국사회에서만 통하는 일이 아닌 듯합니다. 2017년, 한국에서도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과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고소한 여성들이 줄줄이 무고죄의 피의자**가 되는 광경이

*출처: https://www.nytimes.com/2017/10/30/health/men-rape-sexual-assault.html, 번역문은 http://www.ziksir.com/ziksir/view/5289 참고.

**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자,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와 구별되며, 또한 판결확정 이전의 개념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인과 구별된다. 이병태(2017), 『개정판 :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p.1169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지 않았다고 피해를 호소해도 법과 사회는 피해자에게 '동의하지 않았음'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고, 가해자들은 여성이 동의한 줄 알았다거나 동의하진 않았지만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말 따위로 성폭력 아님을 외치는 중입니다.

불행히도 한국사회는 그런 가해자들의 주장에 심정적 동의를 표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분위기를 배경삼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역고소는 이들의 행동지침으로 유포되는 중입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자기반성을 할 수 있게 조력하기보다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변호사 사무실의 광고가 지하철 광고에 등장하고 온라인 포털 광고에 줄줄이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아동 성추행, 강간 범죄, 기타 성범죄, 말 못할 일로 고통 받고 계십니까?
> 억울하도록 과중한 처벌, 그것 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 부당한 처벌을 무죄, 불기소, 집행유예로 이끌어 드립니다."
>
> **교대역의 한 법무법인 광고***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말할 수 없던' 성폭력 피해는 점차 '말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 2017년 9월 27일 한국여성민우회 첫사람 발표회 '연관검색어: 억울하게, 실수로, 호기심에'에서 첫사람 '미어캣(미간에 힘을 주고 어이없는 재판부와 피고인의 아무 말을 캣치하는)' 기획단은 (1)성폭력 전담재판부에 대한 조사와 (2)성폭력 피고인 변호사 광고를 모니터링했고 이날 발표에서 어이없는 재판부와 피고인의 아무말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인용사례는 이날 발표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하는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왜곡 보도되고, 동의한 성관계는 아니지만 강간은 아니라고 말하는 잘못된 인식 속에서 '억울한' 가해자들은 법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부강간 장면을 촬영하던 중에 합의되지 않은 연기를 한 남배우가 여배우를 성추행한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나를 고소한 것'이라고 몰아세웠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남성 가해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이 나빠 앙심을 품고 과장하여 고소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명 남성연예인이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일이 연이어 일어났고, 대기업 여성 직원들이 자신의 피해를 호소한 것을 두고 기업들은 역고소를 예고하는 언론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폭력 역고소는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낯선 단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2001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지원단체의 역고소 투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신의 제자에게 성폭력을 가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교수의 행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대구여성의전화는 사건경과와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하였고 가해교수는 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이에 여성운동단체들은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피해자 지원활동을 가로막는 가해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며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즉각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대구여성의전화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2003도2137)"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은 또한 "(가해자가) 스스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사실"에 대해서도 명시하였습니다. 법이 피해자의 입을 막는 데 쓰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 당연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전국의 피해자지원단체들이 일궈낸 값진 결과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에 이 판례는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에 두루 참조되고 있고,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들은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무죄를 떠나 '가해자에게 역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힘겨운 일입니다. 판결이 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버티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고, 명예훼손, 모욕 등 가해자들의 무분별한 역고소로 인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되어가고, 설사 말한다고 하더라도 역고소 피의자가 되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폭력 상담소에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은 세상이, 그리고 법이 과연 자신의 피해를 믿어줄 것인지 다시 물어오기 시작했고, 성폭력은 다시 '말할 수 없는' 문제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가해자들의 무분별한 역고소를 제대로 거르고 판단할 만한 기준점이 부재합니다. 최근 일어난 유명연예인에 의한 피해여성 무고 고소들 역시 '성폭력 사실이 없었다'는 입증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피해자를 의심하기만 하면 무고가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꽃뱀' 의심은 너무 쉽게 고소로 이어지곤 합니다. 여성운동단체들은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이에 대항하는 운동을

펼쳐오고 있고, 여러 명의 피해자 중에 어떤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현재 실형을 살고 있지만, 어떤 피해자들은 재판부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성운동이 펼쳐온 저항의 역사와 힘들이 모여 단지 의심만으로 피해여성을 고소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안내서는 실제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성폭력 가해자들이 '일단 하고 보는' 역고소의 과정과 이를 어떻게 분별 있게 감지해야 하는지, 어떠한 역고소에 휘말리더라도 스스로가 당당한 피해자임을 잊지 말고 힘을 내자고 말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병원 등 관련 기관들, 경찰과 검찰, 법원, 언론,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주변인인 우리 모두에게 이 안내서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성폭력 역고소의 정의

(1) 성폭력 역고소란?

성폭력 가해자가 피소이후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박하거나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수단으로 역고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성폭력 역고소에 활용되는 법적 조치들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은 다양합니다. 형법에 근거한 고소 유형에는 무고죄(형법 제156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위증죄(형법 제152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갈죄(형법 제350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넷 등에 피해사실을 알릴 경우 가해자는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으로,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 등에 인터뷰를 하거나 제보를 했을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민법 제390조, 750~766조)을 걸기도 합니다. 그 외 가해자들이 자신의 형을 감경할 목적으로, 혹은 피해자를 힘들게 할 목적으로 활용하는 법적 조치는 다양합니다.

2. 성폭력 역고소 논란의 사회적 배경

(1)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

● 낮은 신고율

성폭력에 대한 역고소가 왜 논란이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낮은 신고율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율은 2.2%에 불과합니다. 어떤 범죄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범죄피해 사안이 경미하여 굳이 신고하지 않고도 피해회복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절도, 심각한 폭행 등의 범죄 신고율은 낮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율이 낮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짐작하다시피 성폭력 신고율이 낮은 것은 범죄가 경미하거나 사건이 사소해서가 아니라 범죄 증명의 어려움, 가해자 처벌의 불확실성, 가해자와 친족 등 친밀한 관계, 이례적인 피해자 비난, 보복의 두려움, 수사기관의 비협조 등이 예견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에게만 정조의 의무를 부과하고 비난해 온 가부장적 남성중심성의 영향으로 피해 여성 및 그 가족 등이 성폭력을 범죄피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은폐해야 할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인식도 신고를 망설이게 합니다. 또한 신고 및 수사과정,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여성을 모욕하거나 성폭력 유발의 책임을 묻는 등 2차 피해의 우려를 안고 있다는 점도 낮은 신고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

성폭력은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과하다는 범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를 동정하고 감싸는 온정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도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여, 2013년 6월 19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도 가능했었지요. 최근에 이르러서, 성폭력에 대한 무고가 마치 성폭력 범죄 자체보다 훨씬 더 위중한 범죄로 여겨지는 사회적 기류에는 이와 같은 사회적 맥락과 배경이 작동합니다.

친고죄 폐지를 통해 성폭력을 개인 수준에서 해결하도록 했던 과거의 관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면서, 성폭력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진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폭력 무고에 관한 논란은 실제 있지도 않은 성폭력 피해를 허위로 신고하는 여성의 수가 너무 많아서라기보다는, 성폭력이 이전처럼 더 이상 개인적 합의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불만, 엄벌주의에 대한 불안, 여성에 대한 성적 통제와 위협이라는 남성우위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두려움에 기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의 의식조사는 이러한 세태를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간을 신고하는 여성들은 상대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질문에 남성의 31.3%가 '그렇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조사에 응답한 남성 셋 중 한 명은 성폭력 무고를 의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성폭력을 다루는 언론 보도의 문제와 지침의 부재

● 중립적이지 못한 언론

언론이 준수해야 할 보도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한 일방의 주장만을 싣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에 있어 '동의'를 얻었다는 가해자의 주장, 따라서 성폭력이 아니라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싣지 말 것, 성적접촉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같은 비중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중립성 규정의 준수만으로도 사건이 편파적으로 이해되거나 해석되는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보도 용어사용 지침의 예

성폭력 보도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가는 사건에 대한 이해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의 표는 언론이 성폭력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할 용어, 주로 사용해야 할 용어와 그 이유를 간략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보도 용어사용 지침의 예〉*

경 계	제 안	이 유
성추문	성폭력	범죄라는 점을 희석함
성관계	성폭력	동의에 의한 성관계와 성폭력의 경계를 희석함
구강성교	강요된 구강/성기 접촉	피해자의 주체적 행동인 양 오인
애무	더듬는 것/원치 않은 성접촉	가해자가 폭력적이지 않음을 함의, 범죄라는 점을 희석
키스	강제적 접촉	
관여/연루	강제로/강요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동참함을 암시함
피해자가 인정 피해자가 고(자)백	피해자가 신고 피해자가 사실을 드러냄	피해자 비난/가해자 면책
고소인/고발자	피해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적극적 행동을 함으로써 해를 가하는 것으로 비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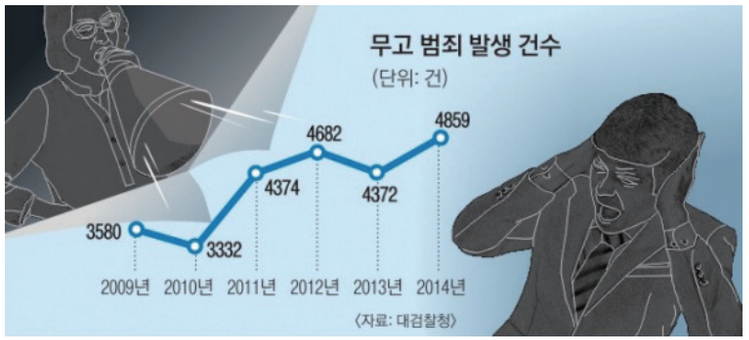
그 외에도 성폭력 사건 보도에서 언론인들이 준수해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나 맥락 없이 피해자를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경우 피해자 비난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할 것, 피해자의 옷차림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자제, 성폭력 과정에서 흉기가 사용되지 않았고, 눈에 띄는 상처가 없음을 강조할 필요 없음, 피해자의 과거 성적 이력 내지는 자발적으로 동행했다는 점 언급할 필요 없음, 피해자의 사생활, 습관, 외모 등에 대한 언급 자제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 무고사건 보도의 문제점

2016년 7월 27일 서울신문은 유명연예인 성폭력 무고사건을 보도하면서 전체 무고건수를 싣고 있습니다. 여성이 무언가를 폭로하는 모습, 남성이 고통 받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마치 성폭력 범죄의 무고 건수가 상당하다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보도가 사용하고 있는 무고 건수는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전체 무고범죄의 건수이며, 이 중에서 몇 건이 성폭력 무고인지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거나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 Maine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2016), "Reporting on Sexual Violence: A Media Guide for Maine Journalists", p.4

* Minnesota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2013), "Reporting on Sexual Violence: A Guide for Journalists", p.10 참고



출처 : 서울신문 2016. 07. 28. "박유천 이어 이진욱까지 무고죄 역고소… 진술 번복 왜 판치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29010020

성폭력 사건, 그리고 성폭력의 무고사건에 있어 언론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의 무고가 일방적인 '꽃뱀'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에는 언론의 보도태도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폭력의 무고를 보도하는 언론의 편파적 보도기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혐의 용어의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피의자가 된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결을 강조하면서 마치 무혐의가 무죄인 양 대중들이 오독하게 하는 것이죠. 실제 인터넷 댓글 등에선 '무혐의'를 무죄로 해석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언론이 성범죄 관련 보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이 무혐의, 증거없음, 증거불충분, 진술철회, 고소취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이후 보도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성폭력 무고건수 자료를 인용하는 보도에 있는데, 무고 발생건에 대한 정확한 자료 설명 없이 성범죄 무고가 빈발하고 있는 듯 보도하는 경우는 자제가 필요합니다.

(3) 성폭력 신화(Sexual Violence Myth)와 통념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범주에서 통념이 작동합니다. 하나는 성폭력 그 자체에 대한 통념이 있고, 그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념이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만들어냅니다. 즉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인데, 피해자답지 못한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보호할만한 피해자와 보호할 필요가 없는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성폭력을 유발한 자로서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태도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

- 가해자는 완벽히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 가해자는 정신이상자이거나 저소득층일 것이다
-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성폭력이 발생할 것이다
- 심야시간,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것이다
- 가족 등 친밀한 사람과 주거공간은 성폭력과 별 관련이 없을 것이다
- 무기내지는 흉기가 사용되어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을 것이다
-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념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해 빨리 신고를 하거나 촬영이나 녹음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남기려고 한 경우에도 그 적극성이 피해자다움과

배치된다고 여겨 피해사실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고가 늦거나 증거를 남겨두지 않았다고 해서 의심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신고를 즉시 하지 않았는지(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찍어두지 않았는지(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지) 등의 질문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돌아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자들은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추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합니다. 위의 내용들이 통념에 불과한 것은 실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각자의 이유들로 다른 방식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

-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즉시 바로 신고할 것이다
- 신고 시, 극도로 흥분하고 불안한 상태일 것이다
- 범죄의 대상이 될 만한 젊고 매력적인 여성일 것이다
- 과거 어떠한 범죄와도 관련된 적 없을 것이다
- 경찰수사에 적극적이고 협조적일 것이다
- 피해당시, 약물을 복용하거나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 실제 폭력 피해자의 경험들

- 후회와 두려움, 자책감으로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
- 평정을 되찾은 상태에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연령과 체형, 외모 특성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과거의 행적이 피해자를 의심하는데 악용되어선 안 된다
- 경찰이 피해자를 신뢰하지 않을 때 피해자 역시 경찰을 불신할 수 있다
-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이거나, 가해자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동의 하에 술을 먹거나 숙박업소에 갔을 수 있다

성폭력 신화와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이 널리 퍼져 있는 사회에서는 실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협소하고, 피해자를 의구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의심하고 진술을 믿지 않는 것,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 가해자를 걱정하고 동정하는 일들은 성폭력 신화의 효과인데, 이는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4) 통념의 효과: 피해자에 대한 불신과 피해 의심

● '꽃뱀' 낙인

한국사회는 성폭력 피해 호소를 소위 '꽃뱀'에 의한 허위신고, 그리고 '불쌍하고 억울한 남성'에 관련된 사건으로 보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사건의 면모를 알아보려하기보다 '꽃뱀' 사건으로 미리 단정해버리는 태도는 주로 피해자가 되는 여성에 대한 신뢰가 낮은 사회, 즉 여성의 말을 잘 믿지 않고, 신뢰할만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 수사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성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념이 많은 사회에서는 여러 형태의 후유증을 양산합니다. 첫째, 원칙 없는 성폭력 피해 의심은 수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를 조사하는 대신 피해자를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기 쉽고 수사관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들을 제대로 수집하지 않거나, 수사가 지연

되는 동안 주요 증거들이 인멸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부실한 수사는 증거 불충분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로 인해 가해자가 무죄방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구제되기보다는 처벌 받는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보다 가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할 때, 성폭력 범죄와 그 피해자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 뚜렷한 물리적 증거 없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기소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결국, 사회전체에 만연해 있는 피해자를 향한 강한 의심은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부여하고, 피해자에게는 비난과 두려움을 초래함으로써 성폭력 신고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효과를 산출합니다. 성폭력의 낮은 신고율과 높은 강간 불구속률* 은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연결되어 평가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없을 때, 범죄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할 리 없고, 이는 더 높은 성폭력 발생률과 재범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폭력 무고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지침 마련에 대한 요구는 단지 개인적 억울함의 수준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신뢰, 전체 사회의 정의실현과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의 「2016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강간사건의 불구속률은 91.26%에 이르고, 법무연수원의 「2016 범죄백서」에 따르면 강간의 불기소율은 47.38%에 이른다.

a Guide for supporting VICTIMS of Counter-Accusations of SEXUAL VIOLENCE

II. 성폭력 역고소의 유형별 특징 알아보기

1. 무고죄 _22
(1) 근거법령 _22
(2) '허위사실'의 의미 _23
(3) 성폭력 무고에 대한 국제 수사지침 : '적극적 증명' _28
(4) 피해 경험에 대한 무고 오인 _30
(5) 무고죄 기소의 두 가지 경로 _32

2. 명예훼손 _42
(1) 근거법령 _42
(2) 위법성의 조각 : '공공의 이익' _44
(3) 명예훼손 역고소를 통해 얻는 가해자의 이익 : '밑져야 본전' _46
(4) 명예훼손 역고소를 통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내용들 _48

3. 그밖에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역고소의 유형들 _50

성폭력 역고소의 유형별 특징 알아보기

Supporting VICTIMS of (Counter-Accusations of SEXUAL VIOLENCE

1. 무고죄

(1) 근거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의 무고(False Allegation of Rape)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조작·신고하여 특정인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려는 목적성 있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무고로 고소를 하는 경우와 성폭력범죄 수사과정에서 검사에 의해 무고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 시점은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이며, 수사에 착수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자체가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성폭력 신고가 무고의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 지인들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무고 위험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은 법이 자신을 무고의 가해자로 지목할거라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무고죄 역고소로 유죄를 받은 사례

성폭력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친구가 저한테 무고죄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구요. 근데 당연히 저는 무고가 아니니까 무고죄가 될 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피해를 입은 건 저인데, 제가 무고로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2) '허위사실'의 의미

피해자의 말처럼 성폭력 피해자는 결코 자신의 피해를 '허위사실'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인식은 무고죄의 적용에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면 그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대법원 2000도1908).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신고'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판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도1908]**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96도771]**

또한 허위사실이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 때 그러한 허위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범죄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며, 범죄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것은 '허위신고'가 아니라 '입증되지 않은 것(unsubstantiated)'

국제경찰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는 '허위신고'와 '성폭력이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데 실패한 조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성폭력 신고의 허위 판정은 오직 철저한 조사 이후에 가능하며, 이때 성폭력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실패한 조사와 허위신고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폭력 사건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신고자의 호소가 거짓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성폭력 사건의 '혐의없음' 판결이 곧바로 피해자의 '허위신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성폭력이 일어났음을 증명하는데 실패한 조사'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할 것입니다.

무혐의는 검찰수사단계에서 유죄혐의를 둘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무죄는 재판단계에서 죄가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무혐의가 곧 가해자의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성폭력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해서 피해자의 성폭력 신고를 '허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혐의'는 '무죄'가 아닙니다.

* 1893년 설립된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경찰 대상 교육훈련자료와 범죄 수사 및 조사 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보급해왔으며, 특히 성범죄사건의 수사 및 피해자 조사 지침을 마련하는데 있어 상당한 수준의 성인지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한국 역시 회원국이다. http://www.theiacp.org/

범죄인가 또는 허위고소인가?

Investigating Sexual Assaults(IACP National Law Enforcement Policy Center, 2005)에서 제시한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의 원칙 중,

아마 성공적인 성폭력 수사와 기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벽이면서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부분의 성폭력 혐의가 거짓이라는 강력하고도 설득력 있는 신화이다. 거짓 강간죄 비율은 낮게는 25%에서 높게는 8-90%까지 폭넓고 다양하게 추정된다. 이런 차이는 관점과 용어, 정보수집방법론, 보고를 거짓으로 판명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성폭력 신고가 허위라는 판명은 어떤 범죄가 저질러지거나 시도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성립될 때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오직 철저한 조사 이후에만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은 성폭력이 일어났음을 증명하는데 실패한 조사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수사는 **입증되지 않음(unsubstantiated)**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신고가 거짓이라는 판단은 폭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 '허위신고'로 자주 오인되는 피해자 특성

신고를 늦추거나 사건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누락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이는 보편적인 특징이고, 이런 특징들을 허위신고의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수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피해자의 특정한 반응에 근거해서 허위신고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러한 오류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잘못 해석되는 행동들

Investigating Sexual Assaults(IACP National Law Enforcement Policy Center, 2005)에서 제시한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의 원칙 중,

어떤 사건들은 부적절하게 허위신고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수사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특정한 반응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몇몇 요인들은 전형적으로 허위신고로 오인하는 근거가 된다.

- 피해자가 신고를 늦춤
- 피해자를 찾는데 실패함
- 가해자를 식별하는 데 실패함
- 입증 증거의 부족
- 피해자나 증인에 의한 협력의 부족
- 잘못된 사법구역에 신고가 이루어짐
- 피해자의 이야기가 불일치함(진술불일치)
- 피해자의 주취
- 피해자의 약물복용
-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으로 여겨짐
- 피해자의 성 이력
- 피해자가 사건을 확신하지 못함
- 피해자의 공격성
- 피해자가 수사와 기소에 따르지 않는 경우
- 피해자에 의한 번복

이런 특성들은 성폭력 신고가 허위임을 제시하는 근거로 보아서는 안 되고, 절대 일어나지 않았음을 제시하는 근거로 보아서도 안 된다. 연구들은 이러한 특성이 성폭

력의 현실 동학을 반영하는 것이며 보편적인 반응이라고 말해왔다. **피해자의 사건 설명이 누락되거나 과장되고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자동적으로 암시하지 않는다.**

(3) 성폭력 무고에 대한 국제 수사지침 : '적극적 증명'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의 피의자로 인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사지침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첫째, 경찰은 반드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도 완벽한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성폭력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및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고된 사건의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며, 그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심증, 불신, 짐작으로 사건을 예단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둘째, 철저한 수사 결과, 어떠한 성폭력도 없었고,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는 물리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오류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로써,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경찰은 어떤 신고가 성폭력 무고에 해당하는 허위신고라는 것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피해자의 조사 시 반응과 행동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첫 피해자 조사에서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 삼아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그를 빌미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도리어 피해자를 수사하는 등의 자세가 지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국제경찰장협회와 마찬가지로 신고한 사실을 허위사실로 판단하여 무고죄로 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증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판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중요한 것은 '적극적 증명'의 기준이 재판단계에서가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서,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증거제시 없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무고의 피의자로 기소하는 일 자체가 차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판에서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목표가 되거나 만족할만한 결과로 여겨질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무리하게 성폭력 무고 피의자로 전환되어 기소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4) 피해 경험에 대한 무고 오인

● 잘못 던져진 질문들

"이 남자를 먼저 꼬신적 없냐"는 질문은 실제로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받은 질문입니다. "당신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이 문장은 실제로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 피해자가 검찰조사 단계에서 들은 말입니다. 이런 의심은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의 피의자로 만드는 과정에서 등장하며, 피해자가 아무리 아니라고 대답해도 질문자의 의심이 쉽게 거둬지지는 않습니다.

● 사과를 기다리는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이후 신고나 고소를 늦추는 것은 많은 경우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때 발생합니다. 가해자를 곧바로 신고하고 법에 호소할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가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발뺌하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경우 피해자는 법에 호소할 것을 결심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마음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책임감, 법에 대한 믿음으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 성폭력 사실을 흐리는 가해자의 말·말·말

하지만 가해자가 "서로 사랑했다", "썸타는 사이였다"는 등의 말로 성폭력 가해 사실을 흐릴 때, 의심은 피해자에게로 이동하며, 이때 수사관, 법관들은 피해자의 특정한 반응에 관심을 둡니다. 정말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는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인지를 피해자에게 묻고, 계속되는 질문에 기억이 흩어진 피해자는 당황하며, 확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다시 의혹의 대상이 됩니다. 요컨대 피해자의 혼란, 당황, 조각난 기억, 느린 판단과 판단의 번복 등은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겨 온 사회문화적인 조건으로 일어나는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혼동의 시간'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보이고 있는 법리입니다.

판례 **협박 및 강간, 상해로 고소하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무죄를 선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5. 25.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정에서 조사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법 2013고합280**]

판례 **강제추행으로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를 검사가 무고죄로 기소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무죄를 선고**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략) **회식이 끝날 무렵 피고인이 쾌활한 모습을 보였다고거나 회식 이후 ooo의 집에 가서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법 2014고단1992]**

(5) 무고죄 기소의 두 가지 경로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로 수사와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①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와 ② 성폭력 사건 담당 검사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기소**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

성폭력 가해자는 사회에 만연한 피해자 비난의 정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이 중대한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가해를

* 이 안내서의 p.111 참고
** 이 안내서의 p.113 참고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와 남성중심의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피해자가 유혹했다"거나 "피해자도 좋아했다", 혹은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그러한 가해 주장이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합니다.

● 가해자의 무고죄 고소시기

가해자의 피해자 무고 고소는 성폭력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순간부터 가해자는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성폭력 사건의 조사가 끝나고 판결이 난 후 무고죄 여부를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시점은 성폭력 고소 직후 진행되기도 하며, 가해자가 고소한 이상 성폭력 사건과 무고 사건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때, 피해자인 여성은 피의자로 동시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된 피해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그러나 무고의 피의자가 되었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법·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례 **회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무죄가 나오자, 가해자가 무고로 고소한 경우**

그래서 무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됐다. 끝났다. 이랬는데, 계속 고소를 하니까 그 남자가. 경찰에서 또 나온 거에요. 다른 경찰에서. 이번에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무고를 했던 안 했던 그 남자가 계속 고소장을 썼**

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받아야 된대요. 그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 사회생활 못하죠. 계속 그렇게 사회생활 못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피해자라고 고소를 한 시점부터가 너무 내가 힘드니까.**

● 무고죄로 인한 가해자의 순이익

최근 무고에 대한 위협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고소하는 순간 각오해야 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침묵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무고 위협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사람들이 피해자가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피소될 것을 우려하는/추측하는 순간이고, 가해자가 "나도 너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순간이며, 미안하다고 말하던 가해자가 얼굴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고소를 결심한 그 순간은 또한 주변인들로부터 "독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고, 매 순간 의심받을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얻는 순이익은, 자신의 무죄가 아니라, 바로 피해자를 향한 집단적 '의심'과 이로 인해 확산되는 피해자의 고통입니다.

가해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무고하게'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가해자는 죄질 불량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판례 **강제추행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무고로 고소하여 죄질 불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255]

② 성폭력 사건 담당 검사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기소하는 경우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무고로 인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아래의 판례는 강간과 폭행으로 가해자를 신고한 여성을 조사하면서 담당 검사가 강간은 무혐의, 폭행은 약식기소(벌금100만원)한 후 오히려 피해 여성을 무고 및 간통으로 기소하여 구속 수사한 경우입니다. 결국 피해 여성은 무고의 무죄(대법원 2004. 09. 24)를 받아내고, 자신을 구속 수사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이후 강간 및 폭행 가해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부분적으로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무엇을 근거로 피해자의 무고를 인지하게 될까요? 여기서 잠깐 검사가 어떻게 해서 피해자를 무고로 의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 **가해자를 강간 및 폭행으로 고소한 여성이 검사의 무고 인지로 기소된 사례로, 인용 판결문은 피해여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 중 일부**

담당검사는 이 강간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다만 가해자의 폭행에 대해서만 벌금100만원으로 약식 기소하였으며, 다시 여성을 무고 및 간통혐의으로 기소하였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피해 여성은 최종적으로 무고 및 간통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고는 2000. 5. 20. 피고를 상대로 2000. 2. 21.자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담당검사는 2000. 8. 28. **위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1999. 11. 6.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0. 12. 4. 다시 피고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담당검사는 강간의 점에 대한 원고의 위 각 고소와 관련하여 **오히려 원고를 무고로 인지하여**, 2001. 2. 26. 구속 수사한 뒤 2001. 3. 6. 원고를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고단○○68호)하였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5825]**

위 사건에서 강간 피해를 조사하던 검사가 피해자를 무고로 구속한 이유는 강간이 '허위사실'임에도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강간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것은 가해자의 무고 주장이 검사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고죄 무죄판결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1노○○44 판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대법원 2002도○○69 판결) 무고라는 누명은 벗을 수 있었지만, 가해자의 '합의한 성관계'라는 주장 외에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기소한 검사의 잘못된 판단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로 남았습니다.

성폭력 담당 검사의 무고 의심은 다음의 세 가지 원인으로 일어납니다. 첫째, 검사가 성폭력 사건의 특성이나 가해자 특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검사는 가해자의 거짓말을 신뢰하기 쉽습니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다움의 편견에 갇힌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의심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에 기반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입증해야 할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태도와 행동에 집중하는 오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검사가 성폭력사건 및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사례 **강제추행 가해자의 당당함을 억울함으로 이해하는 경우**

그 사람이 정말 가해자라면 어떻게 당당하게 고소를 하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고소를 하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다. (수사관이) 이렇게 얘길 하는 거예요. 끝났죠 게임. 근데 나는 거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일단 나한테, **이미 조사시작 하기 전부터 '이 여자는 그냥 꽃뱀이다. 무고를 한 범인이다'라는 판단 하에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허민숙(2017), "너 같은 피해자는 본 적이 없다 :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기소를 통해 본 수사과정의 비합리성과 피해자다움의 신화",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33권 3호, p. 15, 피해자 인터뷰 인용문 중>

성폭력 가해자의 당당함은 억울함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때의 억울함이 추행하지도 않아서가 아니라, '나만 걸려서 억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깟 사소한 추행으로 나를 고소까지 하다니' 라는 원망과 '법으로 가봤자 누구 말을 더 믿어줄 것 같아?'라는 확신이 합쳐진 당당함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당함은 성폭력 가해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 왔습니다. 가해자들은 거의 대부분 당당합니다. 물론 법정에서 가해자는 반성하는 모습을 연출하거나 연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들은 쉽게 당당함, 뻔뻔함,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폭력 가해사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피해자의 편이 아닐 거라 노골적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반성이 전달될 때는 그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길 때입니다. 자신이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부끄러워할 때 그 마음은 타인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성을 상시적으로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 당연한 남성문화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하는 일을 나도 했을 뿐인데, 그것을 성폭력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에게 원망을 집중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 검사가 법적 중립을 잃고 성폭력 피해자다움의 신화와 편견에 갇힌 경우

사례 차분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끝났다가 검찰로 넘어갔는데, 이제 검사님이 대질신문 하자고 대질신문을 했어요. **근데 대질신문 할 때도 [변호사가]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지 된다고 그래가지고 차분하게 얘기를 했더니 성추행 피해자 같지가 않다.** 그래서 무고 그거를 좀 받아야겠다.

사례 또박또박 얘기했더니.

피해자로서 갔어요. 그때 나는 피해자였는데, 그 수사관은 **이미 나를 무고의 피의자로 딱 찍었어.** (가자마자요?) 어, 가자마자 첫 순간에서부터 처음부터 제가 눈치도 빠르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세 네 마디를 나누는 순간, 이 여자가 나를 피해자로 보지 않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구요. 대사 중간 중간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고개를 그렇게 흔들어요. 내가 진실을 얘기하면 그 진실을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게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진실을 얘기하면 고개를 흔들어요. 인상을 쓰면서, "이상한데요" / "뭐가 이상합니까?" 이렇게 얘길 하면, "저는 이런 피해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피해자라뇨?) 저도 모르죠. 제가 뭐 수사관 앞에서 수사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수사관이 하는 말이 난 수사관 경력이 많다. 경력이 많고 많은 성추행 피해자를 만났다. **그런데 너 같은 피해자를 본적이 없다.** (중략) **나의 수사 받는 태도가, 일반 피해자 같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에요.** 어떤 태돈데. 나는 물어보는 질문에 또박또박또박 똑똑하게 했을 뿐이예요. 그런데 너무 자기가 보기에 너무 당돌했던 거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너무 대답을 잘했어요. **피해자라면 어쨌든 주눅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대한다고 느끼셨어요?) 내 기분에 대체 어떤 피해자여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조용히 해야 되고, 일단은 좀 슬퍼해야 되고, 좀 울면서, 저는 억울했어요. 이렇게 얘길 해야 되는 건가 싶었

어요. 아주 불쌍해 보여야 되고. 나는 당당하게, 아닙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했습니다. 또박또박하게.

<허민숙(2017), "너 같은 피해자는 본 적이 없다 :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기소를 통해 본 수사과정의 비합리성과 피해자다움의 신화",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33권 3호, p. 9, p.12, 피해자 인터뷰 인용문 중>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편견이 갖는 특징이 그러하듯이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편견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건해결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전형을 깨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분할 수도 있고, 차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돕는 주변인들은 가급적 침착하게 진술하라고 조언하고 피해자도 감정적인 동요 없이 차분히 증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조언과 연습이 잘 되어 차분하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역사와 주변자원들, 지지자들의 여부와 조사관의 분위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검사가 사실에 기반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앞의 두 가지 이유들, 즉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성폭력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이 강한 검사일수록 '뚜렷한 증거 없이' 피해자를 무고로 기소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일어납니다.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밝힐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찾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곤란하게 하려고 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지만, 피해자같지 않다고 느끼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꼬시려고 했다'는 가해자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면서 명확한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피해자를 무고로 인지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아래 사건은 CCTV에 찍힌 장면이나 주변인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꼬시려고'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액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검사는 더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무고로 인지합니다.

사례 무고죄 역고소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무고라는 게 저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무고를 했다는 정확한 증거.** 그죠?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요구했다거나 정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남자를 곤란하게 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 남자랑 성추행 이후에 연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사과 받는 자리에서 만난 이후로는요. 근데 제가 왜 무고에 유죄가 나오는지도 모르겠는 거에요. 솔직히.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난데, 그 cctv를 보면서 제가 진짜 그 남자를 꼬시려고 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랬다면 제가 도망칠 필요도 없는 거고.. 고소도 한 일주일 있다가 했단 말이에요. 하…. 모르겠네…

2. 명예훼손

(1) 근거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지인이나 공공에 알릴 때 상대는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가해자가 소송을 걸지 못 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한다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축되어 성폭력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는 명예훼손죄가 피해자 입을 막는 용도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사례 **명예훼손 역고소 당사자**

명예훼손 고소를 일단 하는 것 자체가 이 쪽에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막아버리는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공개적인 자리든, 아니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든, 그 어떤 것도 진실을 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냥 카톡이나 이런 걸 한다 해도, 다 그게 다 나중에 걸린다는 거예요.** 정말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말하는 거 그런 것 외에는. 뭐, 그런데 괜히 그렇게 해서 어쩌면 거기에 그렇게 걸려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가가지고 하고 있는 중인데 명예훼손으로 막 전과 기록이 남아서 좋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3개월, 4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흘러버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잊혀져버리고 그게 그냥 조용히 묻어져서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중략) 당연히. 명예훼손일거라고 생각도 아예 못했고, 들어보긴 했지만 그런데 그게 엄청 먼 얘기지 이게 이렇게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저는. 그리고 금방 어떻게 생각하고 해요, 이런데서 막, 그런 명예훼손이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인지도 정말로 몰랐고, **보통 명예훼손이라 그러면 거짓말로 왜 그 사람을 되게 안 좋게 하려고 막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막 사람들한테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그냥 딱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말하는 게 명예훼손일 줄 몰랐죠.**

사례 **명예훼손 역고소 당사자**

정말 여기서 사과를 하면 끝내겠다는 작정을 하고 갔는데 오히려 저렇게 나오니까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명예훼손으로 우리를 고소 한 거에요, 그러니까 뭔가 막 우리랑 뭔가 협의를 하는 와중에 뭐가 안 돼서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대화하는 와중에 그냥 나는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너도 가서 고소해, 이렇게 벌써 딱 나와 버리는 거니까요. 사과하면 끝내기로 마음먹고 갔던 그 자리에서 그냥...

(2) 위법성의 조각* : '공공의 이익'

하지만 형법 제310조에 의거해서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며,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을 때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가해 행동을 인터넷 등에 올리거나 언론 매체에 제보, 고발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많은 피해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창구가 없거나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때 공공에 알리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학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 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게재한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 위법성 조각(阻却, 막힐 조/의심할 조, 물리칠 각), 형법의 각칙규정 중에 형벌을 규정한 조문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단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행위가 실질적 또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위법성을 조각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다. 이병태(2017), 『개정판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p.987, 이 안내서 p.117 참고.

판례 **OO대 대학교수 연구실 성추행을 지역 여성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기재한 사건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적 표현은 ○○대학교의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서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인 사실, 이와 같이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고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특히 피고인들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지역 민간단체의 대표들로서 사건 발생 이후 피해 여학생 등과의 상담을 거쳐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대학명 생략) 학생회 그리고 지역 여성단체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사기관과 학교 당국을 상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학내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던 중 자신들의 활동내용을 알려 이를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홈페이지의 인권란 또는 소식지의 인권소식란에 그 주장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옮겨 담거나 요약하여 게재하였을 뿐이고 위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스스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사실,** 그리고 그 표현 자체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은 전혀 없고 객관적인 진실과 함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시하고 있을 뿐인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지위, 적시 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성범죄에 관한 내용이어서 명예의 훼손정도가 심각하다는 점까지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학내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2003도2137]**

(3) 명예훼손 역고소를 통해 얻는 가해자의 이익 : '밑져야 본전'

무고죄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경찰신고나 고소장 접수 등 공식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가능한 반면, 명예훼손은 공식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성폭력 고소를 결심하기 이전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시점에도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과를 원하는데 가해자는 사과할 마음이 없을 때, 가해자는 소송까지는 가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성찰하는 것보다는 발뺌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며, 대부분 가해자보다 취약한 조건에 있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용합니다. 강간 외 성폭력을 사소하게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러한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를 최적의 무기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례 명예훼손 역고소 당사자

아 똑같이 저 사람처럼 들고 나가지 말자 저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을 했으니까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접게 되고, 그러면서 어영부영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OOO은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면 계속 네가 불리해지고, 왜 그 때 안했냐 이런 식으로 너무 불리해지고, 사실 저쪽에서 명예훼손 고소했으면 바로 네가 했어야하는 게 맞는데, 왜 안했냐고 또 그럴 거고. 그리고 이게 민감한 신체부위 만진 것도 아니라서, 사실 이게 가서 처벌 되든 안 되든, **근데 어차피 제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저렇게 너무 이게 문젠데 문제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고소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도 딱 하나에요. 처벌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뭔가 사회법이나 누군가가 제3자가, 너 이거 잘못한 거야라고 말해주면 걔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이게 사람들이 법적으로 정해놓은 잘못이구나 그리고 그 상태로 사과를 하면 그게 사과가 성립은 되잖아요 최소한. **저는 계속 용서해줄 마음이고 용서해주려고 하는데 사과를 안 하니까.**

명예훼손 고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을 뒤바꿉니다. 가해자가 저지른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의 언어로 알려지기보다 '억울한' 가해자의 감정을 통해 전달됨으로써 피해자는 죄인이 되고 가해자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구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자신의 가해를 빗겨가는 최상의 방식이 되어줍니다. '사과하기' 대신 '소송걸기'를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만큼 가해자가 명예훼손 역고소를 통해 얻는 순익은 적지 않습니다.

동시에 성폭력 입증까지도 피의자가 된 피해자에게 넘기게 되니, 국가기관을 활용하는 가해자의 역고소는 조건이 허락하는 한 '밑져야 본전'인 싸움이 됩니다.

사례 명예훼손 역고소 당사자

저는 가해자가 제 입을 막으려고 고소를 했다고 생각해요. 겁박하려고요. 아무래도 저는 힘이 없고, 가해자는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거나 정신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거 같고..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런 타격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저를 타격을 주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해요(중략). **명예훼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명예를 훼손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성폭력 범죄자가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많이 좀 역고소를 당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사회적으로 만연한 분위기가 꽃뱀일까 하는 가능성을 항상 크게 열어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술하는 데 나는 당연히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고 갔는데 조사실에 들어가면 아, 내가 꽃뱀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가해자의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발화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본인의 가해행동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기보다는 본인의 잘못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송을 거는 것은 훼손된 명예에 대한 보복의 의미보다는 피해자를 괴롭히고 성폭력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공식적이고도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4) 명예훼손 역고소를 통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내용들

●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미치고 있다는 압박감

명예훼손의 또 다른 문제는 비단 피해자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지하는 주변인 및 공동체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립과 입막음이 목적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폭로를 지지하거나 SNS에 공유한 사람들까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예고, 또는 경고하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 사실

성폭력 피해자를 명예훼손 피의자로 조사할 때 수사관은 피해사실 자체에 대해 질문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은 가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를 살필 때 유무죄를 따지게 되는데, 이때 피해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왜 자신이 반항하지 못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피해자인지를 설득해야하는 위치에 서게 되며, 피의자이면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하는 이 상황은 답답함과 무력감으로 이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법성이 조각되며, 때문에 피의자가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과정은 답답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현행 법은 성폭력 피해사실에 침묵하기 보다는 말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례 명예훼손 역고소 당사자

내가 그때 반항을 안 해서, 반항을 못해서 눈에 보이는 반항을 못해서 이 사람(조사관)이 나를 피해자로 보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너무 압도돼서, 내가 거짓말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느낀 공포와 그 당시 현장을 그대로 목격하고 내가 당한 걸 진술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나는 이걸 피해라고 느끼는데 이 사람들은, 꽃뱀이라고 불리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저항은 안 하고 나중에 공론화를 하는 거였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하기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성폭력) 사건 자체를 떠올리면서 말해야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절대 못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3. 그밖에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역고소의 유형들*

● 위증죄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죄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선서 후 거짓을 증언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 측을 통해 역고소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증언개시 후 증언의 주관적 허위성이 있어야 하고, 증언 종료 전 번복하면 무죄이나 종료 후에는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 협박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 각서, 합의금 등을 요구한 것을 빌미로 제기됩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해악의 발생이 직, 간접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서 고지됨을 요합니다. 이 점에서 행위자의 지배력을 초월해서 발생할 해악의 고지(예: 단순히 천재지변, 길흉화복, 인과응보의 도래를 고지하는 것)인 경고와 구별됩니다.

● 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법익을 외부적 명예로 보고 있으므로 명예훼손과의 차이는 사실적시의 유무에 있을 뿐이라는 견해가 통설, 판례이나 모욕죄는 명예감정을 해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유력합니다.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매언·조롱·모언·기타 언어·동작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공론화하거나 신고, 고소, 주변에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해 가해자가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갈죄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강영호 외(2003), 『법률용어사전』, 청림출판, 이병태(2017), 『개정판 :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참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합의금, 치료비를 지급한 후 공갈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합의금 등을 받게 될 때,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강요죄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요의 수단은 폭행 또는 협박이고,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과 권리행사방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는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미수에 해당되며, 강요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폭행죄 또는 협박죄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강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강요하여 사과문, 합의금 등을 받아내려하였다면서 제기하기도 합니다.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해자가 유명인이거나 공적 업무 종사자일 때 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문, 잡지 등 언론에 인터뷰하거나 제보하는 경우에 본 죄명으로 역고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 사실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면,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온라인, SNS 등에 폭로 시 가해자가 활용하기도 하나,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같이 공연성, 사실성, 허위사실 적시가 증명되어야 하므로 공공의 이익과 정의실현에 대한 의도가 확실하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업무란 정신적, 경제적인 것을 묻지 않고 사회생활의 지위를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3.2.9. 선고 92도 2929]

직장내 성폭력이나 혹은 업무, 사업 관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폭력 신고나 폭로가 허위의 사실이고, 그로 인해 업무방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성폭력에 대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고소취하를 종용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전문변호인과 면담 후에 필요하다면, 맞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이 안내서의 p.120 참고

● 피해자 지지자/주변인들에 대한 역고소

때때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지지하거나, 가해자를 함께 규탄한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각종 역고소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지지행동을 할 때, 그 부분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역고소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 사실을 무마하거나,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압력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역고소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일어났던 일을 바탕으로 일관성있게 진술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고소들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Guide for supporting vICTIMS of Counter-Accusation of SEXUAL VIOLENCE

III.
성폭력 역고소 과정에 따른 대응방법 생각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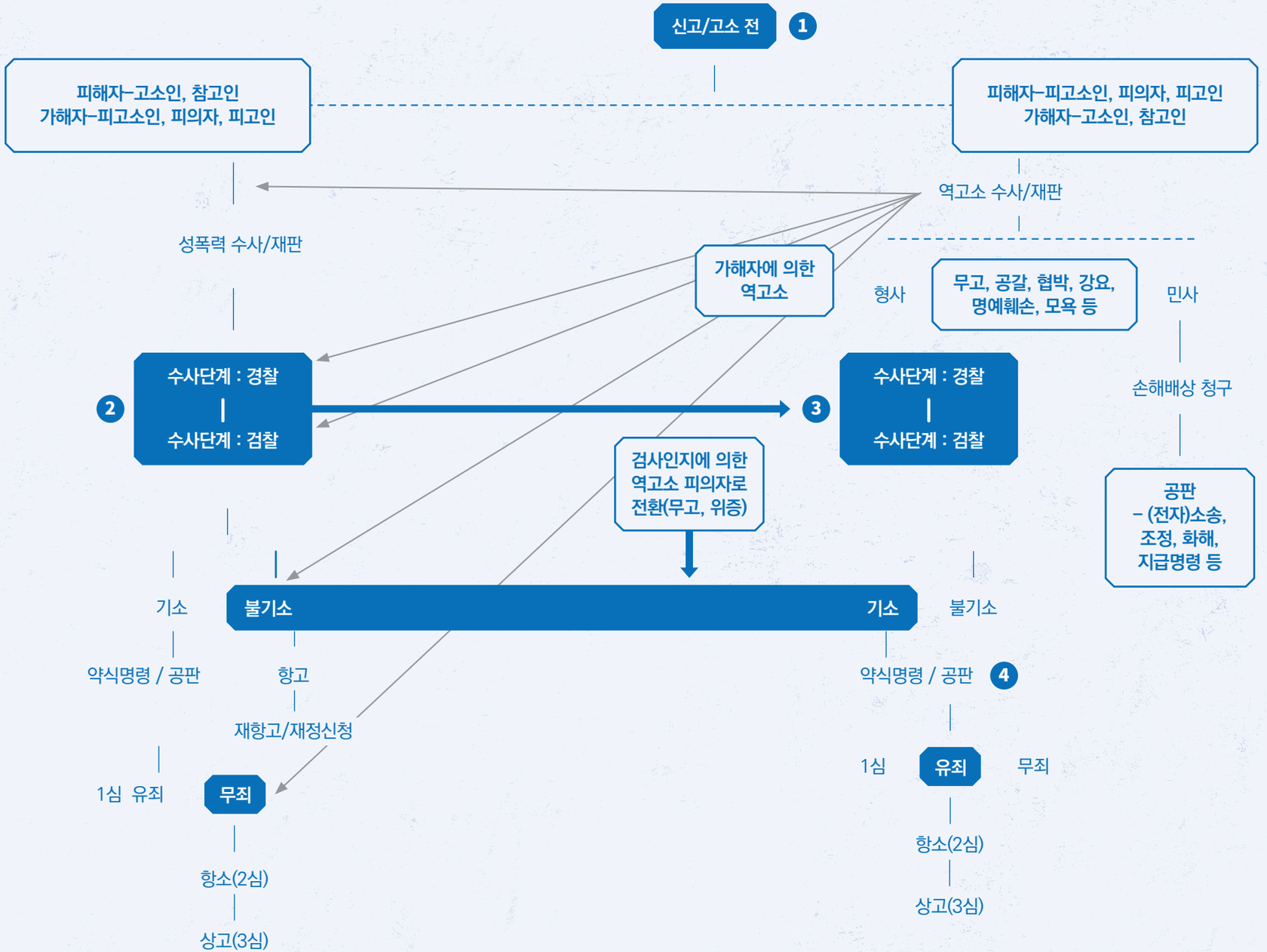
1. 사법제도를 통한 대응 준비하기(①신고/고소 전 단계) _60
(1) 증거 확보하기 _60
(2) 사건 정황 정리하기 _61
(3) 법률상담 및 조력받기 _62

2. 성폭력 수사과정에서의 역고소 위험 방어하기(②성폭력 수사단계) _64
(1) 수사관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하기 _64
(2) 진술의 일관성 유지하기 _67
(3) 피해자 권리를 위한 제도 활용하기 _69
(4) 거짓말탐지검사 대응하기 _71
(5) 합의 진행 시 고려할 점 _73

3. 성폭력 역고소 수사과정에서 방어하기(③역고소 수사단계) _76
(1) 성폭력 사건 담당 검사에 의한 무고 인지 대응하기 _76
(2) 가해자의 고소에 의한 역고소 대응하기 _78

4. 성폭력 역고소 재판과정에서 대응하기(④역고소 재판단계) _81

성폭력 역고소 과정에 따른 대응방법 생각해보기*



* 한국성폭력상담소(2011),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보통의 경험』, 이매진과 셰도우핀즈(2016), 『SP-01: 비평적 개인으로서의 피해자를 위한 젠더 폭력 법정 대응 안내서』를 직접 인용 및 일부 수정하여 재구성함

1. 사법제도를 통한 대응 준비하기 (①성폭력 신고/고소 전 단계)

(1) 증거 확보하기

증거는 고소여부와 상관없이 폭력을 대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성폭력 피해 직후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 고소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고, 이 증거는 역고소를 비롯해 폭력에 대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 사건 발생 후 당장 경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후 72시간 내

몸을 씻지 말고 바로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피해 전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응급키트 등을 이용한 증거 확보, 성병 등의 감염이나 임신을 피하기 위한 조치(응급피임약 72시간 이내 복용) 등

안전하게 보관

분실의 위험을 대비해 증거물을 안전한 곳(속옷 등 사건발생 당시 입은 옷은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별도 보관

흔적 기록하기

몸의 상처나 폭력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 두고 병원 치료 (되도록 병원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상해 진단서 발급)

사건 발생 이후 녹음/캡쳐/기록의 생활화

물리적 폭력이나 강간이 아니더라도 각종 진료 및 상담기록, 사건 전후 카드내역 및 수·발신 통화/문자메시지/이메일/채팅 내역, 증인 및 진술 확보 등 피해사실 및 사건 정황 등을 설명해줄 수 있는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하여 정리

(2) 사건 정황 정리하기

피해자의 기억은 명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을 단계적으로 기록하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점검해나가면 됩니다.

피해자는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힘들고 한편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은 가해자 처벌 및 혹시 모를 역고소에 따른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의 치유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피해자의 기억은 엉키거나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망각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술이나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기억의 한계는 더 커집니다. 피해자 스스로 기억이 왜곡되거나 망각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일단 분명하게 생각나는 부분만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추가로 기억나거나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파악 또는 추정된 피해 상황은 작성일시와 함께 그때그때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건을 인지하게 된 과정, 시점과 맥락을 기록하는 것으로, 고소가 지연된 경우나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데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억지로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무턱대고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기억을 왜곡시키고, 향후 대응과정에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건 발생 직후 신고하여 바로 진술을 하게 된 경우에도 무리해서 한 번에 진술하려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만 진술하고, 피해 상황을 충분히 정리한 후 추가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결심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건 전후 상황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기억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한 정보 및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내용, 사건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시간 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기록합니다. 또한 증거자료도 피해 상황 및 사실 관계와 연결지어 시간 순서에 따라 표의 형식으로 문서화해보는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피해자 본인의 주관적 감정·판단을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3) 법률상담 및 조력받기

소송 준비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고소를 결심했다면, 고소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사실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범죄 구성요건은 무엇인지, 소송의 쟁점은 무엇인지, 증거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소송 진행 과정과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가해자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올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담에서 피해자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며,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나 역고소의 시도 정황이 포착된 것이 있다면 이 또한 다루어 현재 상황에서의 유·불리한 지점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지연된 경우 즉시 신고한 경우에 비해 증거 확보가 더욱 어려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공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의심과 역고소의 위험성도 높아지는 만큼 고소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되도록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과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의 경우 성폭력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가사·역고소에 따른 피소사건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료법률구조의 예산이 정해져 있고 심사에 따라 구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성폭력상담소 등에 상담한 후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거나 연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성폭력 수사과정에서의 역고소 위험 방어하기 (②성폭력 수사단계)

(1) 수사관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하기

수사관의 편견은 수사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편견을 최대한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팽배한 사회에서 수사관 역시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사건과 무관한 성 이력이나 고소전력, 피의자와의 관계나 합의여부, 피해자의 외모나 나이, 직업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고소의도와 피해사실 자체를 의심하고 판단하는 관행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사관의 편견은 처분결과에도 반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에서 '기소의견'과 '불기소의견'으로 나누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데, 경찰의 송치의견이 검찰단계의 기소여부 결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 그 사유와 함께 무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범죄인정안됨 등)으로 불기소 처리되는 경우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경찰 수사관의 편견이 송치의견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만큼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혐의없음 결정시의 유의사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은 수사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2차 피해 체크 리스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즉각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시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경찰서 내의 청문감사실이나 검찰 내의 피해자 지원실,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을 통해 상부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수사관 교체를 요구해야 합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5호),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제985호) 등 수사관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 등을 근거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해자의 권리이자, 이후 처분결과에 따른 대응 시 수사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되므로 문제제기 과정과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절차 시 2차 피해 체크리스트 예시

-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는지에 관한 내용과 상관없이 불필요하게 성적인 불편함을 유발하는 말이나 비난조의 질문을 받았나요?
- 평소의 품행, 평판, 직업(성매매 관련 직종 종사자인 경우), 성관계 이력 등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을 받았나요?
- 피해자가 충분히 반항했는지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여러 차례 질문했나요?
- 증거물을 검토할 때 공개된 장소에서 담당 수사관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돌려보며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질문을 했나요?
- 반말을 사용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위압적인 수사를 했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행정규칙 검색을 통해 전문을 볼 수 있음.

-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나요?
- 미리 조치를 부탁했는데도 소환 과정에서 피해자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나요?
-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고소를 취하하라는 압력을 받았나요?
-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무고로 기소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았나요?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제985호)

제51조(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①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이하 '성폭력 등'이라 한다)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
3. 피해자를 소환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피해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피해자에게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로 질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을 삼간다.
5. 성매매 피해자에게는 선불금 등 성매매와 직접 관련된 채권이 법률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미리 알려준다.
6.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록과 분리·밀봉하여 수사기록 말미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7.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② 검찰청에서는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운영하고, 성폭력 등 범죄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수시로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진술의 일관성 유지하기

기억나는 것에 대해 최초 진술부터 핵심내용만 변함없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전 진술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적,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인 성폭력 사건에서 진술은 피해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진술의 일관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진술은 특히 전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므로, 최대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사건 발생 후 최소한 이틀 정도는 휴식 및 정리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진술 당시 기억이 뒤죽박죽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면 이를 충분히 수사관에게 전달하고 기억이 나는 한도 내에서 핵심내용만 진술하고

추가 진술 기일을 잡아야 합니다.

이전 진술을 기억하고 다음 번 진술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초기진술을 포함해 모든 진술조사 시 진술내용을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내용 기록과 함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 및 신뢰관계자를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하고, 진술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가면 유용합니다. 또한 조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중간에 휴식을 요청하며 피해자가 최대한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끝난 후에는 수사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의 내용을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과 피해자의 답변 상에 피해자의 의도나 사실관계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진술조사 시 수사관이 범죄행위를 하나하나 쪼개서 순차적으로 묘사하는 수준의 진술을 요구하기도 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매우 지엽적으로 단어 선택이나 설명이 달라진 것을 가지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기억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사실대로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수사관은 피해자의 편도 아니고, 상담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수사관의 말이나 행동은 기억·기록해야 할 대상이고,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이지, 수사관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에 수사관이 묻지도 않은 부분까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성폭력 수사과정에서의 모든 진술과 기록들이 역고소의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상황이나 주관적인 판단, 심정들에 대한 토로를 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사건 경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이나 자료는 피해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모두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사실 및 자료의 유·불리나 진술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진술 전 법률상담 등을 통해 모든 것을 꺼내 놓고 검토한 뒤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피해자 권리를 위한 제도 활용하기*

피해자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의 권리 보장, 피해 회복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내용 등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대응은 수사기간만 평균 4~6개월을 생각해야 하고, 재판까지 고려하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기나긴 싸움입니다. 최대한 제도적 안전망을 갖춘 상태에서 소송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2014),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안내서』, 여성가족부, pp. 94~98 참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 제시되어 있음.

수사·재판단계

- 성폭력전담수사관에게 조사받을 권리
-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법률구조)
- 의사소통 보조를 받을 권리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권리
-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
-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권리(범죄피해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제도)
- 모욕적이거나 반복되는 조사를 받지 않으며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
- 진술 내용을 비디오 녹화촬영 등으로 보존할 권리
- 공판기일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권리
- 의견을 제출하고 서류를 열람·등사할 권리
- 처분결과를 알 권리

재판의 증인진술 단계

- 진술할 권리
- 피고인의 퇴정을 요구할 권리
-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권리
- 법정 외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권리
- 비디오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을 받을 권리
- 불필요한 반복증언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

재판 이후 단계

- 선고 결과를 알 권리
- 가해자에 대한 보석이나 집행정지의 취소를 요구할 권리

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

- 의료비 지원(의료비, 돌봄비, 간병비)*
- 주거지원(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시설, 국민임대주택)
- 긴급복지지원
- 범죄피해구조금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

(4) 거짓말탐지검사 대응하기

거짓말탐지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검사를 받는다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때, 적합한 심신상태에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폴리그래프)검사가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적, 인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인 성폭력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검사를 많이 하는 추세이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도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거짓말탐지검사는 성폭력과 그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불신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짓'의 결과가 나왔다면, 피해자를 무고혐의로 기소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검사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지원·보조 수단으로,

* 전국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2016 경찰백서에 따르면, 2015년 검사불능을 제외한 총 4,568건, 6,048명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검사가 실시됨. 이 중 성폭력사범에 대한 의뢰건수는 1,421건으로, 전체 의뢰건수의 약 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그 결과는 직접적 증거가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와 진술이 엇갈린다고 거짓말탐지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의 수사와 가해자를 기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거짓말탐지검사에 응하게 되고, 원치 않는 경우에도 담당 수사관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심리생리검사 규정(대검찰청예규 제793호)에 따르면, 거짓말탐지검사는 피검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검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않았거나 진정제 등을 복용하여 의식이 불명료할 때 등의 심신상태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조사를 하자고 했을 때, 수사 진행상황과 수사관의 태도, 피해자의 심신상태 등을 잘 살펴서 조사에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진술 외에 범죄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할 만큼(거짓말탐지조사의 필요성이 높은)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가해자는 거짓말탐지조사를 받았는지, 현재 피해자가 거짓말탐지검사에 적합한 심신상태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거짓말탐지검사의 우선 대상자는 가해자이고, 그 검사결과의 필요성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검사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마땅한 만큼 가해자의 거짓말탐지검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사를 받은 후에는 질문 구성이나 내용이 편향적이지는 않았는지 등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져 보고, 문제가 있을 시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87.7.21, 87도968; 1984.2.14., 83도3146).

(5) 합의 진행 시 고려할 점

합의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분명히 하되, 그 진행 시기와 과정, 내용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회복을 위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공판 절차 상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 보상권을 확보할 수도 있으나, 소송의 어려움과 배상명령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생각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직접 요구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원하면 소위 '꽃뱀'으로 의심받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를 무고 등으로 기소하고 처벌하는데 주된 판단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은 (돈을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성폭력과 피해자다

*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내지 제35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내지 제62조)

움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기인합니다.* 상대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제했을 때, 수사·재판기관에서 이를 가해자가 잘못을 저질렀음을 드러내는 증거나 2차 피해로 문제 삼는 경우는 적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은 형사 합의를 하나의 권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합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이 존재하고 역고소 될 위험성도 높은 현실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태도 여하에 따라 고소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합의 여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과를 받기 위해, 가해자 측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합의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실제 합의에 도달하거나 이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내용이 가해자 측에 유리하게 활용되거나 가해자나 수사기관에서 역고소의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명목으로 무고나 협박 등으로 피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접근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정해두는 것이 좋고, 특히 형사소송을 고려하고 있거나 진행 중이라면 합의 진행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되지만, 합의는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양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법조인의 성별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태(2003,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다른 범죄와 비교해 강간사건의 경우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의 항목에 '그렇다'를 포함해 80% 이상이 '강간이 허위고소가 많다'고 응답함.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수사나 재판 도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와 재판이 종료되는 범죄 유형으로서, 성폭력범죄 관련법 개정(시행 2013.6.19.)에 따라 형법상 추행·간음·결혼 목적 약취·유인죄, 추행·간음 목적으로 약취 유인된자의 은닉·수수, 만 19세 이상의 여성에 대한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위계 위력등에 의한 간음(추행), 13세미만자에 대한 의제 강간(의제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에 대한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됨.

합의를 하기 위해 가해자와 연락할 때는 요구사항을 전달하기에 앞서 가해가가 직접 가해사실을 시인하는 대화내용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가해자는 가해사실을 회피, 축소하거나 부인하려 합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네가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라는 식의 말들을 하며,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먼저 구체적으로 제안하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정해서 알려달라며 떠넘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가해자의 가해사실 인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가해자가 먼저 합의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할 때는 되도록 변호사 등 중개인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합의서에는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명시하고, 합의조건에 대해서도 이행기한과 불이행 시 조치를 반드시 넣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완성된 합의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가해자측과 합의 관련 협상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고소하게 된 상황이라면, 합의 관련 이야기가 오고간 정황과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 등 그 내용에 대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수사 진행 중에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제안 받거나 종용받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수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역고소의 위험이 예상된다면, 수사단계에서의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단계에서도 합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해자의 태도와 수사 진행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하고, 신변안전조치 등 가해자측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3. 성폭력 역고소 수사과정에서 방어하기 (③역고소 수사단계)*

(1) 성폭력 사건 담당 검사에 의한 무고 인지 대응하기

가해자의 고소 없이도 한 순간에 피의자로 내몰릴 수 있는 만큼,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의 경우 가해자의 고소 없이도 검사가 혐의를 두면 인지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우, 무고 인지수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할 때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작성해 통지하기 보다는 유선 상 구두로 언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장 내일 오라며 조사기일을 촉박하게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건 담당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당연히 참고인(피해자) 조사를 하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부지불식간에 피의자로 내몰려 조사를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변호사나 신뢰관계자의 동석 등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로서 보장되었던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피의자로서의 권리 역시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을 때,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조사 횟수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조사 일정은 물론 조사 진행사항에 대해 수사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조사인 경우 수사관들은 대개 허위진술을 막기 위해 상세한 혐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최대한 무슨 혐의의 조사인지 파악하고, 되도록이면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받아 조사의 목적과 내용, 담당자 등을 분명하게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조사로 출석하라고 했을 때, 피해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 당황스럽고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피해자 조사인 줄 알고 출석한 자리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었을 때,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담당 검사나 수사관한테 내가 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냐고, 무엇이 문제냐며 묻고 따지고 싶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진술을 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이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일단 멈추고 숨을 고를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로 통보받은 상황이라면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진술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녹음 등 기록이 준비된 상태에서 통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한 상황이라면 수사관에게 피의자 조사인 줄 모르고 왔고 이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고, 변호인이나 신뢰관계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고 싶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다시 기일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출석요구서 통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당연히 일정은 조정 가능한 사안입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인은 물론 신뢰관계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조사를 받는 것과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나 성폭력상담소 등과 반드시 상담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최대한 스스로를 방어할 준

* 이 안내서의 p.96 참고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의2(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이 안내서의 p.102 참고

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가 피소된 사건의 처분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여전히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가해자가 고소한 경우에 비해 검찰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기가 어렵고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도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종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주의 가능성 등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성폭력사건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며, 검사가 인지한 경우에는 기소·구속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인식하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가해자의 고소에 의한 역고소 대응하기

가해자의 역고소 목적은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가로막기 위함입니다. 수사·재판상의 피의자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가해자가 성폭력으로 고소당한 후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보다,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신고·고소하지 않은 경우나 성폭력 수사 진행 도중에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피해자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를 지지한 제3자들을 집단적으로 고소하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막고 성폭력 사건을 왜곡시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일정한 대응을 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역고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 역고소 위협이나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를 수사·재판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보복성 고소'라는 성격을 충분히 전달하며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수사·심리하는데 주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역고소 수사는 먼저 고소가 이뤄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이 모두 마무리 될 때까지 유예되기 쉽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또 다시 긴 싸움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위치에서 사법절차를 통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한 만큼 성폭력 수사·재판에 집중하면서 역고소 사건에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역고소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다음의 사항을 기억하며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 전에 반드시 법률상담을 통해 준비하고, 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첫 조사 단계부터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성폭력 피해자가 피소된 사건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가 고소한 사건은 43건(62.3%), 검사에 의해 피고소된 사건은 24건(34.78%), 가해자 주변인이 고소한 사건은 2건(2.9%)이었음. 이 중 피고소 결과를 보면, 전체 32건 중 가해자가 고소한 사건(21건)의 71.4%(15건)는 성폭력 피해자가 승소함. 한편 검사에 의해 피고소된 사건(10건) 중 단 1건만이 성폭력 피해자가 승소함. 한국성폭력위기센터(2016), 「성폭력피해자가 피소된 사건에서의 법적지원」,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상반기 실무자 워크숍 자료, p.47 참조.

- 가해자가 취해온 모든 메시지, SNS, 메일, 전화 통화 등은 삭제하지 말고 캡쳐 및 저장해 두세요.
- 무고, 명예훼손 등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꼼꼼히 작성해 봅니다. 성폭력 사건 정황과 역고소 사건 정황을 각각 시간 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서 자료로 준비해가면 유용합니다.
- 수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 시 근무 시간 등 나의 일정과 맞지 않는다면, 맞는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작성해 둔 글을 바탕으로 첫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확인하여,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의를 제기합니다.
-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명예훼손(공연성,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과 관련 없는 내용을 질문 받게 된다면, 적절히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다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의 말하기를 지지한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역고소는 피해자의 지인인 사람들도 있지만, 다수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타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와 특정 법인이 손을 잡고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고소하여 피고소인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는 식의 '기획고소'의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의 역고소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그를 지지한 제3자들의 연대가 더욱 중요합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연대를 이어가며 서로의 사건 진행 상황과 자료, 대응전략을 공유할 때 역고소 피해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성폭력 역고소 재판과정에서 대응하기 (④역고소 재판단계)

기나긴 싸움인 만큼, 지지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역고소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등을 통해 최대한 모든 수사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판 전에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고소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의 불일치,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역고소 죄목에 따른 범죄구성요건과 위법성을 조각낼 수 있는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지지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에 들어가기 전 검사의 공소사실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무죄를 주장할지, 공소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가져갈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피고인으로서는 상황은 최대한 막아야 하겠지만, 수사과정보다 재판과정에서 역고소 피해자의 진술권 및 방어권이 좀 더 보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나긴 싸움이 시작된 만큼, 피해자의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a Guide for supporting vICTIMS of Counter-Accusations of SEXUAL VIOLENCE

Ⅳ.
성폭력 피해자·지원자로서의 나를 살펴보기

1. 성폭력 역고소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 _84

2. 내가 지원자라면? _87

(1) 나의 사회적 위치와 조건 돌아보기 _87

(2) 지원자로서 나의 인식 점검하기 _91

성폭력 피해자 지원자로서의 나를 살펴보기

a Guide for supporting VICTIMS of Counter-Accusations of SEXUAL VIOLENCE

1. 성폭력 역고소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

주변인이나 내가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역고소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에 맞서는 힘을 잃지 않기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성폭력 사건 해결에 정답은 없지만, 전략은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은 개별 피해자, 가해자, 주변인들과 사건처리 담당자의 인식과 감수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일률적인 정답이 있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서 피해자가 제일 원하고, 위험부담이 적은 선택을 위해 매순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위한 마음을 열어두세요.

* 한국성폭력상담소(2011),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 보통의 경험』, 이매진에서 일부 수정하여 재구성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좋은 조력자가 절실합니다.

성폭력 고소, 공론화, 역고소로 이어지는 지난한 과정에서 힘이 되어줄 조력자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다른 피해자들이 겪은 상황과 피해자가 나아가야 할 전략에 대해 좀 더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피해자 편이 되어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말에 공감해주고, 때로는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줄 만큼 믿음과 신뢰가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또는 그런 조력자가 된다면 긴 사건처리 과정에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응하면서 요청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진행하다보면 단칼에 맺고 끊어야 할 때도 있고 유연하게 협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진심어린 사과를 할 의향이 없으면서 합의나 협상을 요청한다면 연락을 멈추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이미 고소 중이고 계획이 명확하다면 발목 잡히지 않고 나아가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고소나 진정 사건에서 가해자의 사과와 반성이 진심으로 전달된다면 합의나 협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법이 해주지 못하는 보상과 요구사항을 확보하는 자구책이고, 가해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수사·재판 과정에서 좋은 조력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할 몫이 가장 큽니다. 소모되는 에너지의 십분의 일은 스스로를 위해 쓰고,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는 시간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일

기나 글쓰기는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행, 독백, 수다, 운동이나 목욕, 때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돌보는 시간을 가지고, 조용한 대화를 시작해 봅시다.

스스로를 충분히 믿어주세요.

성폭력을 문제제기하고, 예상치 못한 역고소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를 믿고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과정은 금전적, 물리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성폭력을 고소했을 것이라고 회고합니다. 없었더라면 좋았을 일이지만, 이미 발생했다면 그 과정은 자신 안에 있는 힘과 용기, 능력을 다시 확인하고 힘든 경험에 대처하는 몸과 마음의 지평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 통념과 남성중심적인 성문화 인식,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구성한 구조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비록 역고소로 '피의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것은 '나'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나는 불운한 사람이 아니라 불의에 대항하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2. 내가 지원자라면?*

(1) 나의 사회적 위치와 조건 돌아보기

나의 사회적 위치와 조건에 대해 인식하기

우리는 성별, 나이, 국적, 교육 수준, 장애, 계급, 외모, 지역, 성정체성 등 복잡한 권력관계가 얽혀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성폭력피해자들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자인 나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사회적 조건을 살핌으로써 '나와 같지만,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2008), 『성폭력 사건 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 성폭력 사건지원자를 위한 가이드』 참고하여 일부 수정

나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나의 조건들을 적어보고, 아래 표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표시해 봅시다.

나의 성별 정체성은?

나의 교육 수준은?

나의 성적 지향은?

나의 출신 지역·거주 지역은?

나의 나이는?

나의 경제적 수준은?

나의 국적은?

나의 외모는?

나의 장애 여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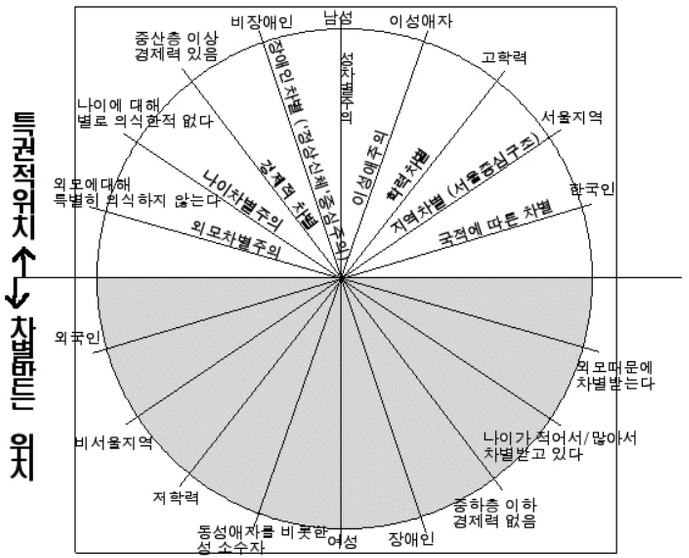
나의 직업·고용 형태는?

나의 성폭력 피해 경험은?

각각의 항목에서,
피해자와 나 사이에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그 차이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써봅시다.

피해자와 나 사이의		사건지원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
공 통 점	차 이 점	
☐ 성별	☐ 성별	
☐ 학력	☐ 학력	
☐ 성정체성	☐ 성정체성	
☐ 지역	☐ 지역	
☐ 나이	☐ 나이	
☐ 경제적 상황	☐ 경제적 상황	
☐ 국적	☐ 국적	
☐ 외모	☐ 외모	
☐ 장애	☐ 장애	



※ 이 표는 주디스 워렐, 파멜라 리머 저, 김민예숙, 강김문숙 역(2004),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 한울아카데미, 68쪽의 내용을 응용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특권과 내가 받는 차별을 적어보고, 이것이 사건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진 특권

내가 받는 차별

사건지원에 미칠 영향

(2) 지원자로서 나의 인식 점검하기

'변화하는 주체로서 피해자'를 바라본다.

▶ 그렇지만 역고소 지원 과정에서의 나는

- 피해자의 여러 모습을 자꾸 성폭력피해와 관련된 것으로만 이해하려 한 적은 없는지
- '피해자가 피해자 같지 않네'라고 '불쌍한 피해자'를 상정하지는 않았는지
- 피해자가 성폭력이 아닌 다른 개인적 복수를 위해 성폭력을 고소·폭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 피해자의 금전적 합의 요구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는 않았는지
- 피해자가 스스로 돌아봐야 할 지점을 '보호'라는 명목으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피해자와 동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

▶ 그렇지만 역고소 지원 과정에서의 나는

-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지는 않는지
- 피해자의 치유 방향과 목표에 대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하고 이야기하지는 않는지
- 피해자의 학력·사회적 위치 등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대우하지는 않는지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하지는 않는지

'피해자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 그렇지만 역고소 지원 과정에서의 나는

- 피해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대신 처리해 주려 하거나, 거절한 경우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지
- 가해자나 주변인, 관계자와 만나는 자리에서 피해자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독려하지 않고 내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얘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남성사회의 기준에 맞춰 성폭력피해의 경중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그렇지만 역고소 지원 과정에서의 나는

- 피해자가 피해에 비해 과도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외면한 적은 없는지
- 강간에 비해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심각한 피해가 아니라는 편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공감하지는 않는지

'성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 그렇지만 역고소 지원 과정에서의 나는

- 반복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자의 책임을 더 크게 생각한 적은 없는지
- 피해자의 성적 표현과 주체성이 성폭력과 역고소가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성폭력은 순결이나 정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 그렇지만 역고소 지원 과정에서의 나는

- '이런 일을 겪고도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는지
- 나도 모르게 위험과 보호의 담론 속에서 '여성의 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 여성이 성적 주체임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 성경험이 많은 여성은 성경험이 없는 여성이나 어린이보다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지

'성폭력사건의 해결은 피해자의 치유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렇지만 역고소 지원 과정에서의 나는

- 법적·제도적 처벌 과정이 끝나자, 사건지원이 끝났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하면서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다른 지원을 놓치고 가지는 않았는지

'제도적 틀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 그렇지만 역고소 지원 과정에서의 나는

- 법적·제도적 해결방법만을 사건의 유일한 해결방법으로 생각하고 지나간 적은 없는지
- 제도적 방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현재의 한계점과 어려움만을 이야기하고 사건해결의 다른 가능성을 찾지 않은 채 지원을 종료한 경우는 없는지

'성폭력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 그렇지만 역고소 지원 과정에서의 나는

- 성폭력과 역고소를 조장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피해자가 호소할 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움직이기보다 무력감 속에서 피해자의 호소와 감정을 회피한 적은 없는지

a Guide for supporting VICTIMS of Counter-Accusations of SEXUAL VIOLENCE

V. 알아 두기

1. 도움이 되는 법과 판례 _96
(1)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 _96
(2) 성폭력 무고, 명예훼손 무죄 판례 _105
(3) 알아두면 좋은 수사·재판 절차와 용어 _110

2. 도움이 되는 자료 _119

3. 도움이 되는 곳 _120

1. 도움이 되는 법과 판례

(1)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

● 형사소송법

분류	항목	내용
제1편 총칙 제6장 서류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제1편 총칙 제12장 증인신문	제164조(신문의청구)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편 총칙 제16장 소송비용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9조(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 아래 표에서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을 의미한다.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242조(피의자신문 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4조의2(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편 제1심 제3장 공판	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 · 등사)	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66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편 제1심 제3장 공판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6조(전문의 진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편 제2장 항소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삭제 〈1963.12.13.〉 6. 삭제 〈1963.12.13.〉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삭제 〈1963.12.13.〉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1963.12.13.〉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852호, 2015.11.12. 일부개정]

분류	항목	내용
제2장 사건의 수사 제3절 임의수사	제12조의 2(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형사소송법」 제244 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신뢰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검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동석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피의자신문에 동석하는 신뢰관계자는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검사는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뢰관계자가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제3장 사건의 처리 제3절 불기소	제69조(불기소처분)	①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 서식(갑)에 따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별지 제124호 서식(을)에 따른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의2 서식에 따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6.9.〉 ②제1항의 불기소 · 기소중지 · 참고인중지 사건기록 또는 기소유예사건기록의 작성에 있어서는 피의자는 1, 2, 3의 순으로, 죄명은 가 · 나 · 다의 순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8.7.3., 2003.7.28., 2005.8.26., 2007.2.20., 2014.6.26.〉
제3장 사건의 처리 제3절 불기소	제69조(불기소처분)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 · 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 · 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 · 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 · 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 · 고발인과 피고소 · 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 ·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 인권보호수사준칙, [시행 2015.4.2.], [법무부훈령 제985호, 2015.4.2. 일부개정]

분류	항목	내용
제2절 체포·구속	제16조(구속수사 기준 등)	① 검사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 시행하는 구속수사 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신중하게 구속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소명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한다. 2. 범행의 성격, 예상되는 선고형량, 피의자의 성행, 전과,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한다. 3.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 또는 그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제17조(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조사)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그 밖에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조사하여야 한다.
제4절 피의자 신문	제33조(출석요구)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출석 요구 방법, 출석 일시 등을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2. 기업체나 그 대표자를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편진술서 등을 활용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3. 피의자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다. 특히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피의자의 조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자백을 받기 위하여 강압적이거나 무리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 2. 피의자를 소환한 즉시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져 기다리게 하거나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3.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의자에게 혐의사실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예단 없이 조사한다. 5. 피의자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6.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건관계인 모두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유할 수 있으나, 부당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7. 칼이나 송곳 등 신체를 해치는 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피의자 근처에 놓아두지 않는다.

(2) 성폭력 무고, 명예훼손 무죄 판례

● 무고

[참고판례] 피해자가 유명인인 가해자를 고소하고, 언론에 폭로하자 무고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 사례, 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노2224 판결[원심 서울지방법원 2017고합 340판결]

사건 :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원심은 판결이유를 명시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에 정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나. 사실요인

피해자 000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유죄판결의 경우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같은 법 제325조는 "파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형식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한 다음 판결문의 이유 중 판단 부분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배심원 평결결과'를 기재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취지나 피고인의 각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였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무죄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제11호 소정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000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000은 00겸000로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피고인은 20**년.**월.**일, **시 경 위 유흥주점 0번룸 남자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 전에 호의를 보이다가 성관계 직후에 연락처도 주지 않은 채 그대로 가버리고, 피고인의 지인인 000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하소연하셨다가 000으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자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월 경 다른 여성이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하여 피해자 및 그 소속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언로보도를 보고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년, *월, *월 경 서울 00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변호사000을 통하여 "피해자가 20**년. **월. **일, **시 경 00 화장실 안에 나를 감금한 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00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0팀 소속 경사000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피고인은 20**년 *월 경 (1)항의 기제와 같이 피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위 000에게 전화로 피해자를 고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 000으로부터 "++ 기자와 인터뷰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기자를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한 것처럼 허위로 말하기로 마음먹고, (중략) &&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국으로 방송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각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4.2.13. 선고 2003도6367 판결참조),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도 4450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피해자를 감금,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가 20**년, **월, **일 경찰에서 피의자로 최초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를 고소한 다른 여성과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한 점, 그 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관한 합의를 추단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눈 것은 '마음에 든다, 키스해도 돼?'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밀어내면서 '왜 나랑 하고 싶어?'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심의 몇 가지 증거에 따르면, (중략)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였거나 대가를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중략) 그렇다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행위를 법률상 감금 및 강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 및 강간으로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것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것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허위라고 피고인이 인식하고 적시하였음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 전부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바(대법원 2003.2.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위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인터뷰의 중요한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그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인터뷰를 하였다면 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을 것이나,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한데(대법원 2003.12.26.선고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명인인 피해자의 성폭행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 사안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데다, 피고인 외에도 ++ 인터뷰 때는 0명, && 인터뷰 때는 0명의 다른 여성들이 피해자를 비슷한 방법의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상황에서 고소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었던 점, 피고인의 피해 사실을 방송국들에 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000이고, 기자 및 PD들이 피고인에게 인터뷰에 응하도록 설득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명예훼손

[참고판례] 성폭력이 허위사실임을 증명할 수 없어 무죄판결된 사례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8. 선고 2013고단4367 판결

사건 :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생명보험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년. *월. *일. **경 서울 ○○구 ○○동에 있는 ○○○생명 ▽▽지점에서 ◈◈◈ 등 보험모집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언어적 성희롱, 20**년. *월. *일. 약 *시 *분경 ○○○생명 ▽▽지점내 지점장실, FC 개인면담시 진정인이 지점장실에 들어가니 지점장 ◑◑◑이 진정인의 청바지 차림을 보고 자기 손으로 눈을 가리며 부끄러운 표정을 연출하며 약간 즐거운 표정으로 놀라는 듯한 감탄사를 말하면서(야한 모습을 보니 부끄럽다는 것을 의미) 눈 둘 때가 없다. 어후 어후 야해서 볼 수가 없다. 너무 야해서 라고 말하고.. 이하 중략. 조금 후에 ◑◑◑ 음~향기 난 냄새에 민감한데(진정인의 향수를 소재로). (중략) 그 전에도 두 번 정도 성적 상상을 유발시키는 말을 진정인의 눈을 쳐다보며 동의를 구하듯 열심히 웃으며 얘기한 적 있었음. 세 번째는 정말 불쾌해서 사무실 가기도 싫었음'이라는 내용으로 '직장내 성희롱 진정서' 유인물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명보험의 다른 지점장과의 간통사건으로 문제가 되어 고소인 ◑◑◑이 중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위 진정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고소인으로부터 골반바지를 입어 야하다거나 향수 냄새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인물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특히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20**년. *월. *일. **시경 ○○○생명 ▽▽지점내 지점장실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골반바지를 입어 야하다거나 향수 냄새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고소인의 각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과의 간통사건에 관한 고소인의 중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위 진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시로부터 상당기간 전인 20**년. *월. *일.경 ◇◇◇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면서 고소인에 대한 위 적시사실을 위원회에 밝힌 바 있는 등 관련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적시 사실을 주장하여 왔었고, 20**년. *월 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대하여도 상담문의를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소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인 점, 고소인이 제5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절차에서는 변호인의 "오빠만 믿어 등 사적 용어를 사용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느냐"는 반대신문에 대해 "없습니다. 그런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을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가,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절차에서는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증인이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전 기일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사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숨겼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고 나서야 이를 시인한 점,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평소복장이 좀 튀고 노출이 심한 편이며, 20**년. *월경 자신의 지점장실에서 피고인과 면담할 당시 피고인의 복장이 일하러 온 자세는 아니었고 특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이 위 적시사실과 같은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고소인도 이 사건 이전에도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성추행 문제로 시비된 적이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들고, 달리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노1336 판결

사건 :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의 판단

(상략)앞서 본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부존재 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못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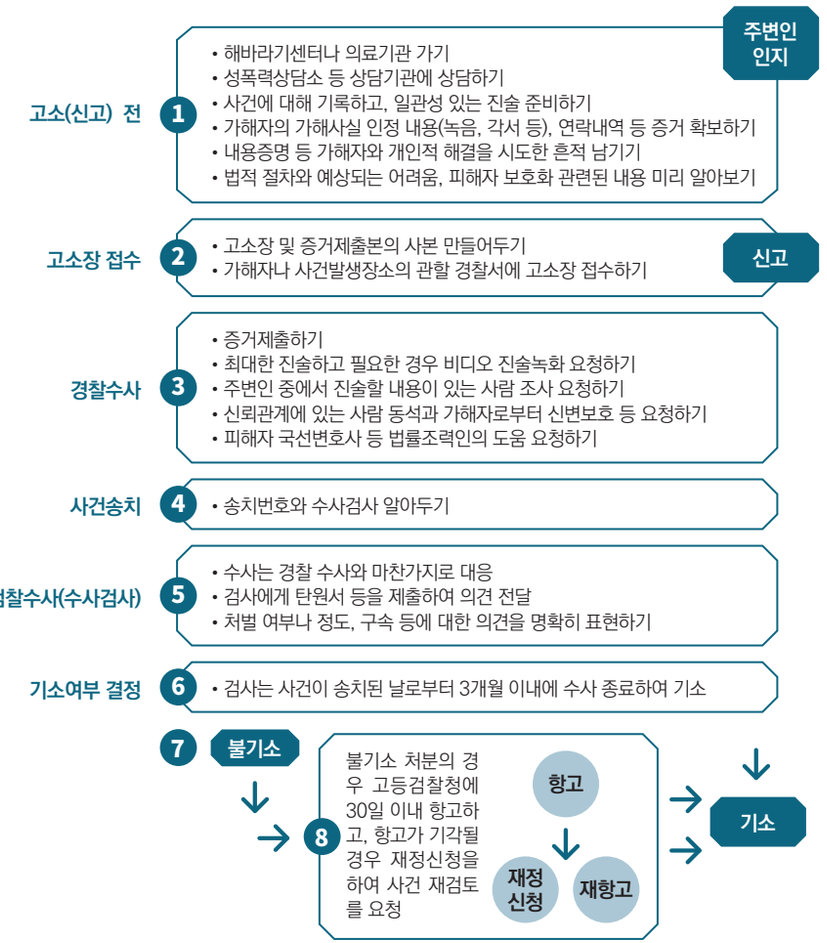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알아두면 좋은 수사·재판 절차와 용어*

이 부분은 수사·재판 절차와, 관련된 용어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었을 때 어떤 단계들을 거칠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수사절차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2014),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안내서』, 한국성폭력상담소(2007),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위한 법률지침서』를 참고하여 일부 수정보완함.

1) 수사개시단계

범죄의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합니다.

◆ 고소, 고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 인지

범죄의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이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는 각각의 범죄마다 다르며 그 기산점은 범죄행위의 종료 시로 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고소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검사가 이를 간과하고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내립니다.

◆ 내사

범죄의 혐의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건 전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말합니다.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2) 경찰조사단계

◆ 피해자조사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대략 1~2개월 내에 피해자를 소환하여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서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수사 내용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이나 참고인을 조사한 내용은 진술조서라고 합니다.

◆ 피고소인, 피의자 조사

경찰은 피해자 조사 후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므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하는 기준은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 증거 인멸 우려, 죄질 등이나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며, 특히 증거가 적은 경우는 더욱 확률이 낮습니다.

◆ 구속수사·재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수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는 구속의 요건으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1)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3)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속이 되더라도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에 의하여 구속되었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영장실질심사

피의자가 구속되기 위해서는 영장전담 판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심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구속적부심

이미 피의자가 구속이 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구속의 적법성을 검토하거나, 구속 이후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졌는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면 법원은 청구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2항4)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은 보통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으로 그치며, 피해자나 제3자의 진술까지 듣는 경우는 적습니다.

3) 경찰수사종결단계

◆ 송치

경찰에서 수사를 완료하고 수사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로 사건 기록을 넘기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 경찰은 고소, 고발장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할 때에는 사건에 대한 의견을 함께 알리는데,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것은 수사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뜻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가 없는 등의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의 의견으로 검찰은 독자적인 수사결과에 의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경찰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고소, 고발자의 권리입니다.

4) 검찰수사단계

◆ 공소제기(기소)

공소제기 또는 기소는 피의자에게 유죄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그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소 또는 고발에 따른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불기소

① 혐의 없음(무혐의, 범죄 인정 안 됨)

수사 결과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2호가목)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②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2호나목)

③ 기소유예

검사가 수사한 결과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를 미루는 결정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1호)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제1항) 또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제3항)

④ 죄가 안 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3호)

⑤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법령의 개폐(改廢)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면(赦免)이 되거나 형이 면제가 된 경우 등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또한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⑥ 각하

검사는 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5호)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롭게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 고발인과 피고소 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등입니다.

◆ 기소중지

피의자나 목격자 등이 출석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할 수 없어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없을 때 내려지는 조치로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잠정적으로 기소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이때 피의자가 도주를 한 경우에는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명수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피의자를 다시 발견하게 되면 다시 수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 항고/재정신청/재항고

① 항고

검사의 처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통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이유를 포함한 항고장을 제출하여 사건재수사신청(항고)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은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의자 성명, 항고이유, 날짜, 작성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정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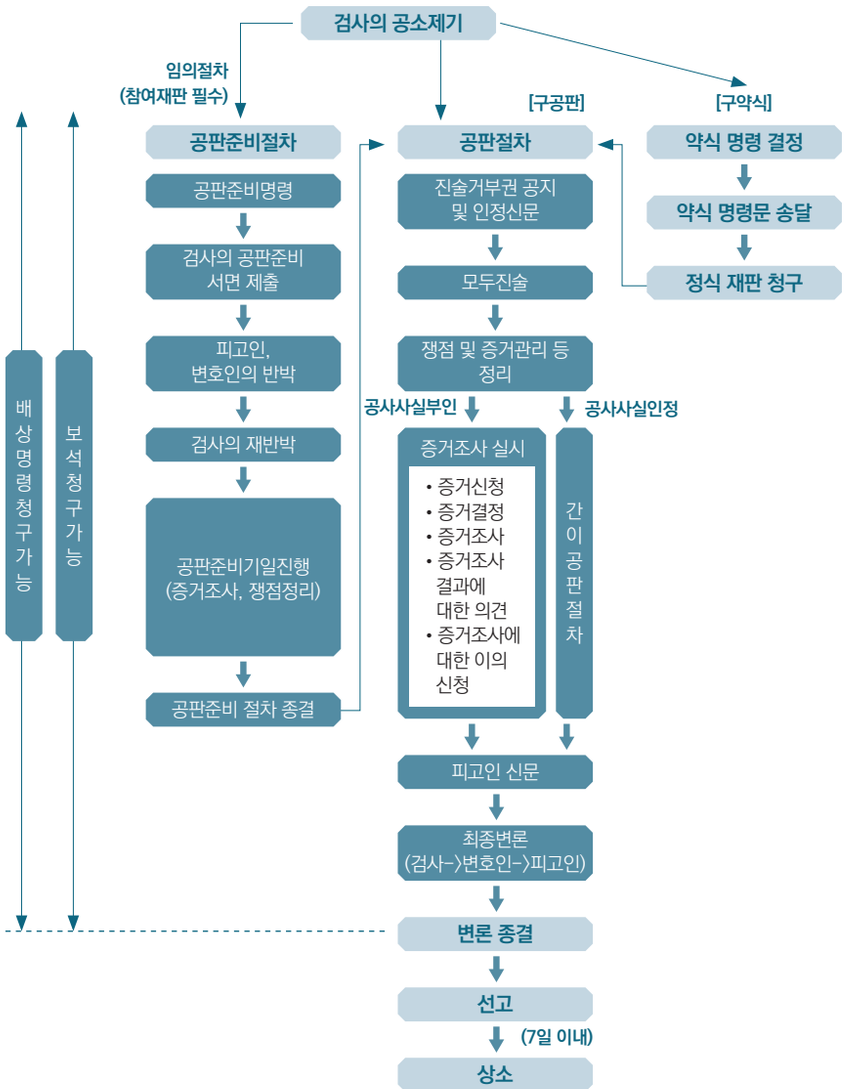
② 재정신청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관할고등법원에 그 결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 2항, 제3항, 제4항)

③ 재항고

재정신청권자(피고인 또는 고소인, 고발인, 대리인)가 아닌 사람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3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항)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 재판단계



◆ 피의자/피고인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수사 절차에서는 피의자로, 재판절차에서는 피고인으로 불립니다.

◆ 약식 명령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즉,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벌금의 부과만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간이하게 기소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간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법원 역시 공판을 열어 피고인을 신문할 필요 없이 서면심리(피고인에 대한 수사기록만을 보고 판단)를 통해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 등의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으며,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항소/상고

재판 판결 선고 후 검사와 피고인 및 피고인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57조)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71조)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 유죄판결과 무죄판결

① 유죄판결

심리 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유죄인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형은 교도소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복역하게 되는 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뤄 그 기간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집행유예이고,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선고유예입니다.

② 무죄판결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공소사실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 배상명령

배상명령제도는 1심 또는 2심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결정을 받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일부라도 인정되면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밖에 용어들

◆ 책임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만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강간을 한 경우 그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하고(구성요건), 법적으로 처벌해야할 나쁜 행위로 인정되지만(위법성), 가해자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만한 정신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책임조각)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게 됩니다.

◆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전환과 위법성 조각사유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의 3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통 구성요건이 인정되면 위법성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며 위법성이 없다는 사유(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어떤 행위가 외형적으로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그런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요소가 있는 경우 범죄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 중 대표적인 것이 정당방위인데, 강간을 하려는 가해자에 대항하다가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상처를 입힌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하지만(구성요건) 그것이 강간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일단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 그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목적을 위해 알린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러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위법성의 조각) 처벌되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

소장접수
- 원고 주소지, 피고 주소지, 불법행위지 관할법원에 제기
- 피해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밝힘
- 증거(치료비 영수증,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문 등) 제출하기

* 제출된 소장을 법원이 심사하여 원, 피고를 표시하고, 인지, 송달료, 관할 등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리고 부족한 부분이 없으면 가해자(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내 1개월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

변론 준비절차
- 가해자(피고)의 답변서와 준비서면 반박, 가능한 모든 주장에 증거/증인 언급
- 소장에 첨부하지 못한 증거 추가제출, 수사/재판 기록은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하여 증거로 제출

* 서면을 통해 피해자(원고)와 가해자(피고)는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보충하는데, 쟁점이 복잡한 경우는 준비기일(정식재판은 아니지만 판사, 원고, 피고가 대면하여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을 통해 쟁점을 정리한다.

↓

변론기일
- 목격자, 전후 상황을 아는 사람, 의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

* 변론준비절차의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

↓

판결선고
- 판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범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치료비 등)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은 민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민법 제750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승소하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동시 내지 확정된 후에 진행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이 되거나, 형사소송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에서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배상 액수에 관하려만 다툼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비교했을 때 가해자의 불법행위 입증이 덜 엄격하므로 형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무죄가 인정된 경우에도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은 크게 정신적 손해(위자료), 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재산적 손해는 소극적 손해(피해자가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수입), 치료비 등 피해자가 지급한 비용인 적극적 손해로 나누어집니다. 세 가지의 손해는 별도로 계산되므로 소장에 기재할 때 각 손해에 해당하는 액수를 밝혀야 하며, 각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정신적 손해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재산보전조치

재산보전조치란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 가해자가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숨기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이러한 재산보전조치의 일종인데, 특히 금전과 관련된 채권(예: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가해자인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서 그 처분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도움이 되는 자료

◆ 성폭력 사건 지원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 한국성폭력상담소(2004),『성폭력사건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 한국성폭력상담소(2011),『보통의 경험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DIY가이드』, 이매진
-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2014),『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안내서』
- 한국성폭력위기센터(2016),『성폭력피해자가 피소된 사건에서의 법적 지원』
- 세도우핀즈(2016),『SP-01: 비평적 개인으로서의 피해자를 위한 젠더 폭력 법정 대응 안내서』

◆ 성폭력 사건 수사 가이드라인

- IACP National Law Enforcement Policy Center(2005), *Investigating Sexual Assaults*
- 인권보호수사준칙 [시행 2015.4.2.] [법무부훈령 제985호, 2015.4.2. 일부개정] (www.law.go.kr에서 검색, 최종검색일 2017.11.20.)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시행 2015.7.28] [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7.28. 폐지제정] (www.law.go.kr에서 검색, 최종검색일 2017.11.20.)

◆ 성폭력 사건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2006)『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
-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2012),『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 언론대응 매뉴얼 개발』
- 법무부(2014),『아동 폭력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연구』
- 여성가족부, 한국기자협회,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2014),『성폭력사건보도수첩』
- 한국기자협회,『인권보도준칙』,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7, 최종검색일 2017년 11월 15일)
- 한국기자협회,『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9, 최종검색일 2017년 11월 15일)
- 한국기자협회,『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1, 최종검색일 2017년 11월 15일)
- Maine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2016), "Reporting on Sexual Violence: A Media Guide for Maine Journalists"

◆ 논문

- 강경화(2012), "성폭력 피해여성 무고죄 적용 요인 분석 : 검찰 수사과정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실천여성학 석사학위 논문
- 허민숙(2016), "성폭력 무고의 재해석", 한국여성학회,『한국여성학』제32권 2호, 1-29쪽
- 정은경(2017),『성폭력 피해 여성의 무고피소경험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 허민숙(2017), "너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기소를 통해 본 수사과정의 비합리성과 피해자다움의 신화", 한국여성학회,『한국여성학』, 제33권 3호, 1-31쪽

3. 도움이 되는 곳

◆ 홈페이지

-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 한국여성의전화 www.hotline.or.kr
- 한국여성민우회 www.womenlink.or.kr
-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로앤비 www.lawnb.com
-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 대법원나의사건검색 www.scourt.go.kr

◆ 무료법률 지원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www.legalaid.or.kr)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www.rape119.or.kr)

◆ 전국성폭력상담소 (2017년 8월 8일 기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단체)

지역	상담소	주소	E-MAIL	상담전용	사무전용
서울	가족과 성 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서울특별시구로구오리로10길 20.201호	lifree5972@hanmail.net	02) 2688-1366	070) 8128-1366
	벧엘케어상담소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102.401호	bethelcare@hanmail.net	02) 896-0401	02) 896-0408
	서초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길 10-10	chg7606@hanmail.net	02) 599-7606	
	이레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25 (신림동, 4층)	iregrin@gmail.com	02) 865-1366	02) 3281-1366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5마길 8-13	w-peace98@hanmail.net	02) 825-1272	02) 825-1273
	탁틴내일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7길 18	ttn8043@tacteen.net	02) 3141-6191	02) 338-8043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시마포구합정동성지1길 32-422층	ksvrc@sisters.or.kr	02) 338-5801	02) 338-2890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59길102호 K.R.C.C(도곡동)	crisis119@hanmail.net	02) 883-9284	02) 883-9285
	한국여성상담센터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22길28 신일빌딩4층	iffemin@hanmail.net	02) 953-1504	02) 953-1704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 나루 3층	fc@womenlink.or.kr	02) 335-1858	02) 739-8858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대로16길 8-4	hotline@hotline.or.kr	02) 2263-6465	02) 3156-5461 3156-5463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7 나길 24	huesame@hanmail.net	02) 2664-1366	
인천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 · 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345 인천명품관 3층	inwomen1365 @hanmail.net	032) 865-1365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42	isvrc@hanmail.net	032) 451-4091~2	032) 451-4093 451-4094~5
경기 남부	가톨릭여성상담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1길 60대학동성별관 2층	helpwoman@hanmail.net	031) 415-0126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경기도광명시오리로953 3층	gmywca@naver.com	02) 2619-8928	02) 898-0734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0-33 대원플라자 802호	kpsangdam@hanmail.net	031) 399-0201	031) 396-0236
	부천여성의전화 부설성폭력상담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248번길 86 현해탑프로자 302호	bwhotline@hanmail.net	032) 328-9711	032) 328-9713 328-9714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149	qhdk1997@naver.com	(032) 655-1366	655-4279
	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갈곡로 8번길 11, 102호	ywcccc@hanmail.net	031) 284-1366	031) 281-1366
	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100 (동호빌딩 6층)	snwhl@naver.com	031) 751-2050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서원시팔달구중부대로20 녹산빌딩7층	suwonhotline @hanmail.net	031) 232-7795	
	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29번길 13	ssialwomen@hanmail.net	031) 797-7032	031) 797-7031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경기도 안산시 광덕서로 66 하눌법조빌딩 412호	anycounsel@hanmail.net	031) 413-9414	031) 413-9410
	안성성교육 성폭력상담센터	경기도 안성시 서당길 39	mh3131@hanmail.net	031) 676-1366	
	안양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9 샤인빌딩 5층	awhl96@hanmail.net	031) 466-1366	031) 442-5385
	평택성폭력상담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25, 2층	pt1366@hanmail.net	031) 618-1366	031) 658-6614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205번길 27 서해상가 4층	friends-1213@hanmail.net	031) 796-1213	031) 796-1274
	행가래로의왕 가정 · 성상담소	경기 의왕시 전주남이길 23-4	sun1st@hanmail.net	031) 452-1311	
경기 북부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21 로데오메탈릭타워	gpminwoo@hanmail.net	031) 919-1366	031) 907-1368
	남양주가정과성 상담소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로 46, 301호(금곡동 양지빌딩)	hlchun@hanmail.net	031) 558-1366	070) 7759-1366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경기도 동두천시 어수로 5	ddcsvc3@hanmail.net	031) 861-5555	867-3100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운정행복센터 2층 여성상담실	pajusangdam @hanmail.net	031)946-0366	031) 946-2096
	포천가족성상담센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71(정우빌딩3층)	pchsvc@hanmail.net	031) 542-3171	031) 542-3172
	행복뜰가정 · 성상담소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학담로 131	happy8321315 @hanmail.net	031) 832-1315	

강원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5(춘천 축산농협 효자지점) 3층	chgwsc@hanmail.net	033) 257-4687	
	속초여성인권센터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강원도속초시동해대로4307 (교동)	womennara@hanmail.net	033) 638-1988	033) 637-1988
	영월성폭력상담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4	rudska57@hanmail.net	033) 375-136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릉지부부설 강릉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454 (포남동) 강릉시여성문화센터2층	gangneung @lawhome.or.kr	033) 652-9556	033) 652-955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동해지부부설동해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188	dsc4943@hanmail.net	033) 535-4943	033) 535-4944
	함께하는공동체부설 원주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원도 원주시 갈머리2길 31, 307호(원주시사회복지센터)	hrtwlew@hanmail.net	033) 765-1366	
	아라리가족성상담소	강원도 정선군(읍) 용담길 73	arari2013@hanmail.net	033) 563-8666	
충남	세종YWCA 성인권상담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 5길 75, 여성회관 1층	gfcc9191@hanmail.net	044) 862- 9191~2	044) 862-9193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 시민모임 태안지부 태안군성 인권상담센터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서문4길 31-6	ggm9536@hanmail.net	041) 675-9536	
	아산성상담지원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순천향로 1060(공수리 1037)	counsel@flsc.or.kr	041) 546- 9191/9181	041) 546-6655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충남 공주시 신금 1길 44-11 뉴턴학원빌딩 4층	broomtree109 @naver.com	041) 852-1950	041) 852-1950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고재 20길 12, 천안신협 2층	hotwhl@hanmail.net	041) 561-0355	041) 561-0303
	충남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66번지 2층	cnsvc97@naver.com	041) 564-0027	041) 564-0026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121-32, 2층	help9949@hanmail.net	041) 634-9949	041) 631-3939
	부여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2	bsc612@hanmail.net	041) 837-1366	041) 830-2923
충북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20(복대동)	c-buk2000@hanmail.net	043) 264-1366	043) 263-2000
	제천성폭력상담소	충청북도 제천시 내제로 5길 12(명동 190-3)	womenjc@hanmail.net	043) 652-0049	043) 653-1331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대성로 57번길 3층	ch0968@hanmail.net	043) 252-0968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36길 4 청주 YWCA 1층 여성종합상담소	cj3008@hanmail.net	043) 268-3008	043) 268-3007

대전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28	ywca3038@hanmail.net	042) 255- 0004/0078	042) 254-3038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98. 2층	sd3999@hanmail.net	042) 712- 1367/1369	042) 712-1368
전남	나주여성상담센터	전라남도 나주시 중앙로 50(성북동) 유선빌딩 3층	nj1366@hanmail.net	061) 332-1366	061) 337-1366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18번길 2층	swan1139@naver.com	061) 381-1366	061) 383-1367
	무안여성상담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22-1	muan8823@hanmail.net	061) 454-1360	061) 454-1361
	보두마상담센터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외 대화길27 하나캐슬203-101	boduma1388 @hanmail.net	061) 324-1388	061) 322-7422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 여수시 어항로 6	talk4001@daum.net	061) 666-4001	061) 666-4002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라남도 순천시 서문성터길 104	scwhl@hanmail.net	061) 755-8033	061) 755-8034
	해남성폭력상담소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30	haenam2005 @hanmail.net	061) 533-9181	061) 533-9181
	행복누리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 83번길 5, 2층	mwomen99 @hanmail.net	061) 283-4552	061) 285-1366
전북	군산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구영 7길, (구)월명동사무소 1층	gsung1366@hanmail.net	063) 445-1366	063) 442-1570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김제시 금성로 53-1	sung1366@naver.com	063) 546-1366	063) 546-8366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인정 2길 12-4, 전북노회회관 3층	svpcc@hanmail.net	063) 236-1366	063) 236-0152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정읍시 수정동 충정로 273, 대율빌딩 5층	jesvpcc1366 @hanmail.net	063) 537-1366	063) 531-1366
	익산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익산상공회의소 5층	iksung3999@hanmail.net	063) 834-1366	063) 834-1377
광주	광주여성의전화 부설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04번길 15	kjwhl@hanmail.net	062) 363- 0442-3	062) 363-0487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동구중앙로196번길3 삼호센터별관102호	sangdam0410 @hanmail.net	062) 521- 1365-6	062) 521-1360 521-1361
	인구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816	click4050@hanmail.net	062) 671-4050	062) 673-1366
제주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8길 32길	novawij@hanmail.net	064) 755-1366	064) 756-4008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11길 3	sehyun717@hanmail.net	064) 748-3040	064) 747-3041

대구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85, 아세아 빌딩 3층	lawdaegu@hanmail.net	053) 745-4501~2	053) 745-4504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31, 혜림한의원 3층	esco11@nate.com	053) 471-6482~3	053) 471-6484 471-6485~6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 · 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46길 16	mentor7979 @hanmail.net	053) 566-1900/568-7942	
경북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안현로 54-11(3층)	1515anna@hanmail.net	054) 777-1366	054) 777-1520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길 41, 3층	gumi1388@hanmail.net	054) 463-1388	054) 463-1386
	로뎀성폭력상담소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766	lodem5276@hanmail.net	053) 853-5276	053) 854-4646
	새경산성폭력상담소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132-1	richanna@hanmail.net	053) 814-1318	
	칠곡종합상담센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69-35	han-8290@hanmail.net	054) 973-8290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동 10번길 6-2	phwomen@hanmail.net	054) 275-7436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경상북도 상주시 영남제일로 1368	pillglim@hanmail.net	054) 534-9996	054) 534-5750
	(사)한마음상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도 죽도로 40번길 8-3	phhan9540@hanmail.net	054) 278-4330	054) 277-9540
경남	거창성 · 가족상담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93-40 거창문화원 3층	0559441828 @hanmail.net	055) 944-1828	055) 944-1829
	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담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0길 56 가고파오피스텔 505호	sangdamso8400 @hanmail.net	055) 244-8400	055) 244-9009
	김해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김해시김해대로2495 화성빌딩202호	ghs6451@hanmail.net	055) 329-6451	055) 329-6453
	사천성가족상담센터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양로 126	gender0416 @hanmail.net	055) 852-9040	055) 852-9040
	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11번길 16, 4층	jhwhl1366@hanmail.net	055) 546-8322	055) 546-0036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72번지	cn5211366@gmail.com	055) 521-1366	055) 521-1367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42 토월복합상가 725호	chwhl@hanmail.net	055) 267-1366	055) 283-8322
	통영YWCA성폭력 상담소	경상남도 통영시 동충 1길 4, 2층	xhddudtjdvhr @hanmail.net	055) 642-0233	055) 648-2070
	함안 성가족상담소	경상남도함안군칠원읍 용산2길70(1층)	haman7941@hanmail.net	055) 587-1367	
	하동성가족상담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22 하동문화예술회관 1층	hadongssung @hanmail.net	070) 4131-1366	055) 884-1360

부산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 · 가정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523 sk허브스카이 A3동 6호	woman-world@hanmail.net	051) 558-8832~3	051) 558-8834
	부산여성의전화 성 · 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55번길 15(전포2동)	pwhl4344@hanmail.net	051) 817-6464 817-6474	051) 817-4344
	사)기장열린상담소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90 303호	gijang77@hanmail.net	051) 531-1366	051) 721-1365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92(광안동)	women114@hanmail.net	051) 753-1377	051) 752-0872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25(남천동)	ingu1004@hanmail.net	051) 624-5584	051) 624-5521
울산	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 가정 · 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3 삼성빌딩 505호	uslifeline91@hanmail.net	052) 267-1366 269-9191	052) 265-557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27, 2층	rkqjqtjdvhr@hanmail.net	052) 245-1366	052) 244-1366
	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울산광역시 동구 내진길 18, 2층	13668282@hanmail.net	052) 252-6770	052) 252-6778

◆ 장애권역 (23개소)

지역	상담소	주소	E-MAIL	상담전용	사무전용
서울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4 덕화빌딩 본관 602호	kscc91@hanmail.net	02) 902-3356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 상가 410호	was1399@hanmail.net	02) 3013-1367	02) 3013-1399
	한국여성장애인 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02호	ss4466@hanmail.net	02) 3675-4465	02) 3675-4466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357 려산빌딩 지하1층	kswpc11@hanmail.net	02) 2658-1366	
인천	인천광역시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707호	882-8369@hanmail.net	032) 424-1366	032) 882-8369
	오내친구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37-10 107동101호	0325045479 @hanmail.net	032) 504-5479	032) 506-5479
경기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92 태평동락커뮤니티 303호	withus3663@hanmail.net	031) 755-2526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426, 태진빌딩 4층	daprc@hanmail.net	031) 840-9203	031) 840-9204
대전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서로 9. 월평빌딩 3층	djw8866@hanmail.net	042) 223-8866	070) 7525-1237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76번길 15-4 동진프라자 3층 22호	dj6371366@hanmail.net	042) 637-1366	
충남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장애인 성폭력아산상담소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115번길 20-14 LK빌딩 201호	heejae5@hanmail.net	041) 541-1514	041) 541-1515
	충남장애인 복지정보화협회 부설천안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 5길 4 두정프라자 301호	cdassd6500 @hanmail.net	041) 592-6500	041) 575-6501
충북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6번길 15-2 홍와상가 2층	hotsisters@hanmail.net	043) 224-9414	043) 224-9415
광주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82번길 8	1366kjdaw@hanmail.net	062) 654-136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3길 1-4번지 4층	jwdc0326@hanmail.net	064) 753-4980	064)753-4982
대구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대구여성장애인 통합상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5길 11	tdaws@hanmail.net	053) 637-6057	053) 637-6064
경북	경북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중앙로 60-1. 3층	sds1366@hanmail.net	054) 843-1366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경상북도구미시문장로12길18-1 (1층)	yn1366@hanmail.net	054) 443-1366	
경남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마산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0길 56, 가고파오피스텔804.805호	5041sos@hanmail.net	055) 247-1366	055) 241-5041
부산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12-3 부산장애인종합회관4층	98pdaws@hanmail.net	051) 583-7735	051) 583-7736
울산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104번지. 402호	ju2008mi@hanmail.net	052) 246-1368	052) 246-1368
전남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목포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361. 2층	younsl4767@hanmail.net	061) 283-4767	061) 284-4767
전북	(사)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봉3길 6번지	happy1004org @hanmail.net	063) 223-3015	

◆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17년 11월 기준)

	보호시설명	지역명	유형	이메일
1	열림터	서울	일반	yeolim94@hanmail.net
2	꿈밭의 사람들	서울	일반	puk6161@hanmail.net
3	푸른희망담쟁이	인천	일반	home2227@hanmail.net
4	양지터	부산	일반	yjt140521@hanmail.net
5	사랑의 집	부산	장애	jip9669@hanmail.net
6	늘해랑	대전	장애	ssjj9730@naver.com
7	나는봄쉼터	대전	친족	iamspring138@hanmail.net
8	징검다리	울산	일반	wldrjaekfl10@korea.com
9	아인빌	대구	일반	nursing@empal.com
10	다솜누리	광주	일반	shim1366@hanmail.net
11	샛터	광주	장애	sa1366@hanmail.net
12	수원 여성의 쉼터	경기도 수원	일반	swshelter98@hanmail.net
13	의정부 사랑의 쉼터	경기도 의정부	일반	ymca1366@hanmail.net
14	하담	경기도 고양	일반	dldufh@hanmail.net
15	목양의 집	경기도 남양주	장애	koreak5555@naver.com
16	소빛	경기도 여주	장애	pium1004@hanmail.net
17	미래꿈하우스	경기도 화성	친족	goodd5674@hanmail.net
18	충주여성케어센터	충주	일반	leemh7785@hanmail.net
19	모퉁잇돌	청주	장애	angelestone@hanmail.net
20	어울림	아산	장애	hra6233@hanmail.net
21	디딤터	전주	일반	svpcc@hanmail.net
22	은혜의 쉼터	군산	일반	en4126@hanmail.net
23	담쟁이쉼터	여수	일반	6969124@hanmail.net
24	해늘	목포	장애	haeneul3767@hanmail.net
25	우리아이집	창원	친족	woorii8818@hanmail.net
26	여성의 쉼터	제주	일반	ywca7994@hanmail.net
27	그린터	제주	장애	greenterjeju@naver.com
28	무지개쉼터	김천	친족	bow0841@hanmail.net
29	마야의 집	원주	일반	wjmaya@daum.net